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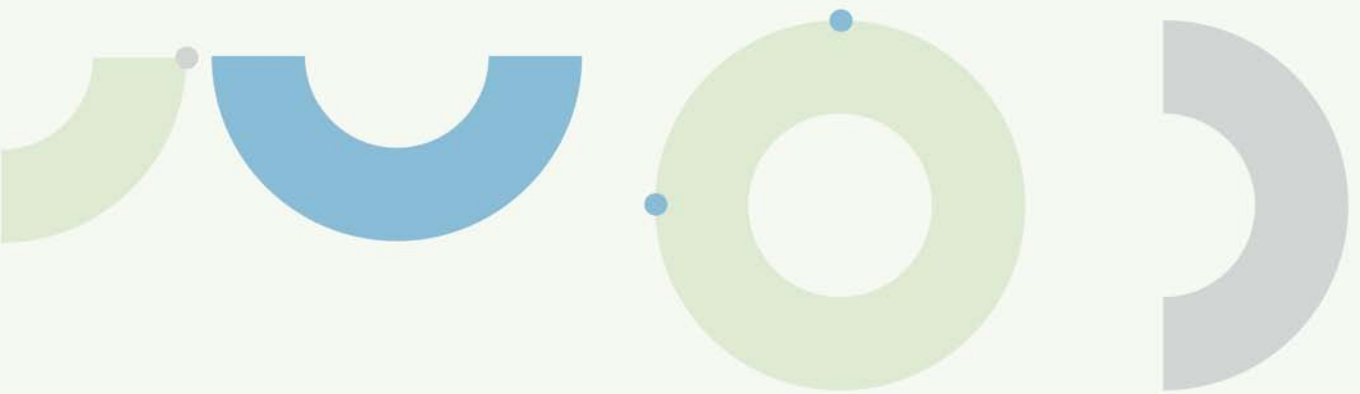
...

# 2022 보험연합 학술대회

2022. 08. 19 **금**

— 9:00am~6:10pm

장소 : K - HOTEL(거문고홀 외)



주최



韓國保險學會



한국리스크관리학회  
Korea Risk Management Society



한국연금학회  
Korean Pension Association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한국보험계리사회  
The Institute of Actuaries of Korea

후원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Life Insurance Social Contribution Committee



보험개발원  
Korea Insurance Development Institute



보험연수원  
KOREA INSURANCE INSTITUTE



# 2022 보험연합학술대회

## 목 차

모시는 글 .....	4
2022 Korea Insurance Joint Conference 발표목록 .....	5
세션별 논문발표 I ~ VIII	
세션 I   [소금홀] 보험경제·경영1 .....	11
세션 II   [소금홀] 보험경제·경영2 .....	17
세션 III   [비파홀] 기후리스크관리 .....	23
세션 IV   [비파홀] 리스크관리 .....	29
세션 V   [해금A홀] 연금 .....	33
세션 VI   [해금A홀] 보험규제와 법 .....	39
세션 VII   [해금B홀] 보험계리1 .....	45
세션 VIII   [해금B홀] 보험계리2 .....	51
[기획세션] 보험 규제·감독 그리고 미래경영	
주제 1: 공·사 건강보험 데이터와 미래경영 / 이현복 교수 (전주대학교) .....	57
주제 2: 디지털금융의 발전과 보험산업의 법적 개선방안 / 유주선 교수 (강남대학교) .....	73
주제 3: 기후변화와 보험규제정책 / 남상욱 교수 (서원대학교) .....	99
『보험학회지』 연구윤리규정 .....	133

## 모시는 글

안녕하십니까?

COVID-19로 3년 만에 오프라인에서 6개 기관이 공동으로 2022년 보험연합학술대회를 주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합학술대회를 기획했던 6월과 달리 확진자수가 10만 명에 육박해서 우려되지만,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서 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 및 정치위기 속에서 포스트팬데믹과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의미에서 2022 연합학술대회를 준비하였습니다. 더 많은 회원님들과 관계자들께서 배우고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장소를 서울 The-K호텔로 정하고 학술대회를 하루로 줄였습니다.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 7월말 현재 사전등록자가 15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2022 기획세션의 주제는 『보험 규제·감독 그리고 미래경영』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인식 속에서 새정부의 규제완화 의지를 고려하고, 미래에도 보험산업과 보험학계가 과거와 같은 성과를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할 주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세 분야를 발표주제로 선정했는데,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데이터와 미래경영’, ‘디지털 금융의 발전과 보험규제 및 감독’, ‘기후변화와 보험규제’에 관한 흥미로운 발표와 심층적인 토론을 기대합니다. 개별세션에서는 24편의 연구가 발표되고 24분의 개별 토론이 진행됩니다.

연합학술대회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보험 분야의 학회가 지난 60여 년간 발전해 온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22 학술대회도 무더운 여름 동안 발표 준비에 애쓰신 27분의 발표자, 29분의 토론자 및 8분의 좌장들께서 흔쾌히 참여해주셔서 가능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합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후원해주신 기관과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각 학회의 상임이사과 준비위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정부출범 초기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실 텐데, 축사를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님, 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님과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님, 그리고 보험업계 임직원 여러분 및 참여해주신 회원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8월 19일에 뵙기를 기대합니다.

2022년 8월

한국보험학회 회장	정기택
한국리스크관리학회 회장	김범
한국연금학회 회장	이창수
한국보험법학회 회장	최병규
보험연구원 원장	안철경
한국보험계리사회 회장	이재민



2022 Korea Insurance Joint Conference  
**2022 보험연합학술대회 발표목록**

○ 전체진행 : 송성주 교수(고려대학교, 한국보험학회 상임이사)

8월 19일 (금)

일 정	
09:00~	등록 (3층 거문고홀)
09:15~10:30	세션별 논문발표 (3층 각 세션실)
10:30~10:45	휴식
10:45~12:00	세션별 논문발표 (3층 각 세션실)
12:10~14:00	점심식사 (1층 포시즌)
14:00~18:00	기획세션 (3층 거문고홀)
14:00~14:10	개회사: 정기택 한국보험학회 회장
14:10~14:30	축 사: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14:30~16:00	주제발표: 보험 규제 · 감독 그리고 미래경영
16:00~16:10	휴식
16:10~18:00	종합토론 및 Q&A
18:00~18:10	연구윤리교육: 한국보험학회 편집위원회
18:10~	만찬 (3층 거문고홀)

세션별 논문발표

<p>세션 I   보험경제·경영1</p> <p>사회: 이봉주 교수 (경희대학교)</p> <p style="text-align: right;">세미나실: 소금홀</p>	
09:15-09:40	<p>비용-편익 관점에서 본 실손의료보험 유지 행태 분석</p> <p>발표: 고재현(성균관대학교 박사과정)·이진형(성균관대학교)</p> <p>토론: 이현복(전주대학교)</p>
09:40-10:05	<p>The Effect of Taxation on Optimal Consumption and Portfolio Decisions Over the Life-cycle</p> <p>발표: 안준희(Tilburg Univ. 박사과정)·Nijman, T.·De Waegenare, A.(Tilburg Univ.)</p> <p>토론: 윤지연(California State Univ., Northridge)</p>
10:05-10:30	<p>국가별 장기균형이자율(UFR) 추정</p> <p>발표: 김선애(성균관대학교 박사과정)·이항석(성균관대학교)·하홍준(Saint Joseph's Univ.) · 손지훈(한국재정정보원)</p> <p>토론: 홍지민(송실대학교)</p>
<p>세션 II   보험경제·경영2</p> <p>사회: 이원돈 교수 (대구대학교)</p> <p style="text-align: right;">세미나실: 소금홀</p>	
10:45-11:10	<p>The Impact of Enterprise Risk Management on Firm Risks</p> <p>발표: 윤지연(California State Univ., Northridge)·David Eckles·Rob Hoyt (Univ. of Georgia)</p> <p>토론: 김동겸(보험연구원)</p>
11:10-11:35	<p>도덕적 해이 하에서 다중 보험사고에 대한 최적 보험계약</p> <p>발표: 이민하(성균관대학교 박사과정)·이항석(성균관대학교)·홍지민(송실대학교)</p> <p>토론: 김경선(보험연구원)</p>
11:35-12:00	<p>사망보험금 역모기지제도 도입을 위한 중고령자의 이용의향 요인 분석 및 시사점</p> <p>발표: 최경진(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전희주(동덕여자대학교)</p> <p>토론: 안준희(Tilburg Univ. 박사과정)</p>

<b>세션 III   기후리스크관리</b>		세미나실: 비파홀
사회: 이상림 교수 (목포대학교)		
09:15-09:40	IPCC 기후리스크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국내태풍으로 인한 리스크 평가 및 전망 발표: 최요한(서울시립대학교 박사과정)·박 찬(서울시립대학교) 토론: 정광민(포항공과대학교)	
09:40-10:05	단계적 태풍 리스크 예측 모형과 기후변화 영향 분석연구 발표: 정광민(포항공과대학교)·감종훈(포항공과대학교)·이승준(포항공과대학교 석사과정) 토론: 손원민(Michigan State Univ.)	
10:05-10:30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연안침수 리스크관리를 위한 적응전략 성능 평가 발표: 박상진(서울대학교 박사과정)·손원민(Michigan State Univ.)·박 용(서울대학교)·이동근(서울대학교) 토론: 정휘철(한국환경연구원)	
10:30-10:55	홍수 예보 임계치 및 영향평가 결과를 활용한 홍수 리스크 평가 발표: 유인상(한국환경연구원)·정휘철(한국환경연구원) 토론: 최요한(서울시립대학교 박사과정)	

<b>세션 IV   리스크관리</b>		세미나실: 비파홀
사회: 김현수 교수 (순천향대학교)		
11:10-11:35	보험 시장의 손해 저감을 위한 위험 관리에 대한 연구: 스프링클러설비를 중심으로 발표: 이준혁(한국화재보험협회) 토론: 이근철(KC보험통계경영컨설팅)	
11:35-12:00	데이터 유출 위험에 대한 공간적 상관성 및 사회 경제적 영향 분석 연구: 미국 사례 중심으로 발표: 조재훈(포항공과대학교 박사과정)·정광민(포항공과대학교) 토론: 이정우(보험연구원)	

세션 V   연금 사회: 양준모 교수 (연세대학교)		세미나실: 해금A홀
09:15-09:40	국민연금의 트라일레마, 해결방안을 찾아서 발표: 유종성(가천대학교) 토론: 류재린(한국보건사회연구원)	
09:40-10:05	국민연금 개혁 대안 모색 발표: 김태일(고려대학교)·신영민(고려대학교 박사과정) 토론: 정원석(보험연구원)	
10:05-10:30	일본 공적연금 일원화 과정의 특징과 시사점 발표: 정재철(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도시보건정책본부) 토론: 유종성(가천대학교)	
세션 VI   보험규제와 법 사회: 최병규 교수 (건국대학교)		세미나실: 해금A홀
10:45-11:10	보험산업 사업구조개편에 관한 연구 발표: 임 준(보험연구원)·이승주(보험연구원) 토론: 양기진(전북대학교)	
11:10-11:35	The Effects of Regulations on Incomplete Sales Incentives 발표: 정원석(보험연구원) 토론: 김영국(국회입법조사처)	
11:35-12:00	자동차보험 약관의 '마약·약물운전' 조항의 해석 발표: 조규성(협성대학교) 토론: 황현아(보험연구원)	

<p>세션 VII   보험계리1</p> <p>사회: 전용범 부회장 (한국보험계리사회)</p>		<p>세미나실: 해금B홀</p>
09:15-09:40	<p><b>외화변액연금 보증옵션의 가치</b></p> <p>발표: 이민하(성균관대학교 박사과정)·이항석(성균관대학교)·하홍준(Saint Joseph's Univ.)</p> <p>토론: 장 철(한양대학교)</p>	
09:40-10:05	<p><b>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강상태에 따른 암질병발생 위험도 분석에 관한 연구</b></p> <p>발표: 전희주(동덕여자대학교)·최경진(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p> <p>토론: 정성희(보험연구원)</p>	
10:05-10:30	<p><b>채무보유 사망자의 대출 현황과 신용생명보험을 통한 리스크관리</b></p> <p>발표: 최종인(한국신용정보원)·백 철(한국신용정보원)</p> <p>토론: 최경진(주택금융연구원)</p>	
<p>세션 VIII   보험계리2</p> <p>사회: 임종국 부회장 (한국보험계리사회)</p>		<p>세미나실: 해금B홀</p>
10:45-11:10	<p><b>인공지능을 활용한 보험료 측정과 편향에 관한 연구</b></p> <p>발표: 안재윤(이화여자대학교)·김경원(이화여자대학교)</p> <p>토론: 백 철(한국신용정보원)</p>	
11:10-11:35	<p><b>거치연금과 주택연금을 고려한 개인의 생애 소비·투자에 관한 연구</b></p> <p>발표: 장 철(한양대학교)·Iqbal Owadally·Andrew Clare(City, Univ. of London)</p> <p>토론: 김세중(보험연구원)</p>	
11:35-12:00	<p><b>리베이트 옵션과 활용</b></p> <p>발표: 이가은(성균관대학교 박사후연구원)·이항석(성균관대학교)·정힘찬(Simon Fraser Univ.)</p> <p>토론: 안재윤(이화여자대학교)</p>	
12:10-14:00	<p>점심식사 (1층 포시즌)</p>	

<b>[오후] 기획세션 : 보험 규제·감독 그리고 미래경영</b> <span style="float: right;">3층 거문고홀</span>	
종합토론 및 Q&A 좌장: 허연 교수(중앙대학교)	
14:00~14:10	개회사: 정기택 한국보험학회 회장
14:10~14:30	축 사: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14:30~16:00	주제발표
	[주제1] 공·사 건강보험 데이터와 미래경영 : 이현복 교수 (전주대학교)
	[주제2] 디지털금융의 발전과 보험산업의 법적 규제방향 : 유주선 교수 (강남대학교)
	[주제3] 기후변화와 보험규제정책 : 남상욱 교수 (서원대학교)
16:00~16:10	휴식
16:10~18:00	[종합토론 및 Q&A] 김지훈(손해보험협회 상무) 김태훈(금융감독원 보험제도팀장) 김홍중(생명보험협회 상무) 정세창(홍익대학교 교수) 황인창(보험연구원 연구위원) <span style="float: right;">가나다순</span>
18:00~18:10	연구윤리교육: 한국보험학회 편집위원회
18:10~ 만찬 (3층 거문고홀)	

2022  
KOREA  
INSURANCE  
JOINT  
CONFERENCE

세션별 논문발표

세션 I

보험경제·경영1

사회: 이봉주 교수 (경희대학교)





발표자	성명	고재현
	소속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박사과정
논문제목	한글	비용-편익 관점에서 본 실손의료보험 유지 행태 분석
	영문	Analysis of the maintenance behavior of indemnity health insurance from a cost-benefit perspective
공동연구	이진형(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논문초록 (Abstract)	<p>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은 60%대로, 이는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국민은 충분한 의료비 보장을 위해 사보험에 가입하며 특히 실손의료보험은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가입하여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린다. 하지만 실손보험의 손해액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보험업계는 손해율이 높은 기존 1, 2세대 가입자들이 새로운 4세대 실손보험으로 넘어가야 손해액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2012부터 2018년까지 7개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비용-편익 관점에서 실손의료보험 유지 및 해약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년 동안 보험금을 전혀 수령받지 않은 집단에 비해 보험금을 수령 받은 집단이 실손의료보험을 해약할 확률이 적었다. 이는 소비자들이 비싼 보험료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해석 가능하다. 더 나아가 실손의료보험이 공적보험에 대한 효율적인 보충적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p>	
Memo		

발표자	성명	안준희
	소속	Tilburg University 박사과정
논문제목	한글	
	영문	The Effect of Taxation on Optimal Consumption and Portfolio Decisions Over the Life-cycle
공동연구	Theo Nijman, Anja De Waegenare (Tilburg University)	
논문초록 (Abstract)	<p>This paper investigates how taxes affect the welfare effects of different accumulation and decumulation strategies over the life-cycle. Using numerical optimization, we compare optimal consumption and investment strategy under different tax regimes in the United States, Netherlands, Australia, and Korea. We evaluate the welfare effect by measuring the certainty equivalent utility loss from not accumulating wealth through the tax-privileged pension account. Our study shows substantial difference in welfare effects in the presence/absence of the taxation rules over the life-cycle, suggesting that ignoring taxes as in the academic literature would significantly distort welfare implications.</p>	
Memo		

발표자	성명	김선애
	소속	성균관대학교 박사과정
논문제목	한글	국가별 장기균형이자율(UFR) 추정
	영문	
공동연구	이항석(성균관대학교), 하홍준(Saint Joseph's University), 손지훈(한국재정정보원)	
논문초록 (Abstract)	<p>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과 지급여력제도가 K-ICS로 바뀔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위한 할인율 산출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보험상품의 만기에 비해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만기가 짧아 시장 이자율만으로는 만기가 긴 보험부채의 할인율을 결정하기 어려우므로 장기이자율을 추정해야 한다.</p> <p>무위험 금리기간구조 추정을 위해서는 무위험 수익률, 최종관찰만기, 장기선도금리(UFR), 최초수렴시점 등을 결정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현재 장기선도금리는 현재 장기이자율은 실질이자율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하에서 지표금리가 변경되거나 통계기간 설정에 따라 장기선도금리가 변하게 된다. 따라서 관측기간에 대한 이슈가 낮고, 경제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거시경제모형(Lee et al.(2021) 모형)을 통해 장기균형이자율을 구한다. 또한 위 모형을 국가별로 적용하여 국가별 장기균형이자율을 산출한다. 그리고 모형 하에서 노동력증가율, 은퇴 연령, 기대 여명, 정부부채, 사회보장지출 등 사회 변화에 따른 장기균형이자율이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p>	
Memo	Lee, H., Ryu, D., & Son, J. (2021). Risk-adjusted valuation in the worker's economic decision making. Finance Research Letters, 102408.	



2022  
KOREA  
INSURANCE  
JOINT  
CONFERENCE

세션별 논문발표

세션 II

보험경제·경영2

사회: 이원돈 교수 (대구대학교)



발표자	성명	윤지연
	소속	California State Univeresity, Northridge
논문제목	한글	Enterprise Risk Management가 회사의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
	영문	The Impact of Enterprise Risk Management on Firm Risks
공동연구	David Eckles, Rob Hoyt (University of Georgia)	
논문초록 (Abstract)	<p>This research investigates whether Enterprise Risk Management (ERM) creates value by allowing firms to take more strategic business risk and greater advantage of opportunities in their core business. Firms that engage in ERM should be able to better understand the aggregate risk inherent in different business activities. With an increased understanding in a firm's risk profile, ERM adopting firms should take a more strategic approach to risk management and expand risk-taking in areas where they do have a comparative advantage. We find that ERM adopting firms are increasing their share of core risk not through risk substitution with non-core risk, but by increasing their non-core risk. This provides evidence that ERM firms are recognizing interactions among sources of risks and the benefits of natural hedges.</p> <p>이 논문은 Enterprise Risk Management (ERM)이 어떻게 (how) 회사의 가치를 창출하는지를 연구한 논문입니다. ERM을 도입한 회사들은 회사의 리스크 profile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회사의 리스크를 전략적인 시각으로 판별하고 분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논문에서 ERM을 도입한 회사들이 core risk의 비중을 높인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는 non-core risk의 비중을 줄이는 방법이 아니라 non-core risk의 비중도 늘어났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이는 ERM을 도입한 회사들이 리스크 간의 상관관계를 잘 인지하고 natural hedge를 잘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p>	
Memo		

발표자	성명	이민하
	소속	성균관대학교 박사과정
논문제목	한글	도덕적 해이 하에서 다중 보험사고에 대한 최적 보험계약
	영문	Optimal indemnity with multiple claims under moral hazard
공동연구	이항석(성균관대학교), 홍지민(숭실대학교)	
논문초록 (Abstract)	<p>본 연구는 도덕적 해이가 존재하는 경우 단일 위험원의 반복적인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다중 청구와 함께 최적의 보험계약에 대한 설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2건의 사고의 경우, 손해액과 손해배상액의 차액으로 정의되는 각 손해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각 손해 자체에서 비감소함수이고, 각 손해분의 분담액의 합은 최초의 손해액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최적의 보상에는 한도까지의 전부 보험과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 보험이 포함된다. 부분 보험은 ARA(절대 위험 회피), 신중함 및 손실 분포의 형태에 따라 각 손실이 특히 불록하거나 오목한 비선형 공동 보험임을 알 수 있다. 두 손실 모두 독립적이지만 두 번째 손실은 더 많은 벌점을 받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이 첫 번째 손실 크기를 줄이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페널티와 보상의 조건은 첫 번째 손실 규모, ARA, 두 번째 손실이 발생한 상태에서의 한계효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연구에서는 손실의 분포가 지수족 분포를 따를 때 최적 보험설계가 효용함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볼 것이다.</p>	
Memo		



발표자	성명	최경진
	소속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논문제목	한글	사망보험금 역모기지제도 도입을 위한 중고령자의 이용의향 요인 분석 및 시사점
	영문	Analysis of factors of intention to use of middle-aged and elderly and Implication for the introduction of Death Benefit Backed Reverse Mortgage System
공동연구	전희주(동덕여자대학교 정보통계학과)	
논문초록 (Abstract)	<p>정부는 지난 2014년 노후대비가 부족한 고령층의 추가노후소득 마련을 위해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정부발표의 일환으로 주요 생명보험회사들은 사망보험금 역모기지 상품을 출시하였다. 그러나 정작 필요한 기존 종신보험 가입자는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또한, 정부의 의도와 달리 보험영업현장에서는 처음부터 노후대비 저축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사망보험금 역모기지과 유사상품인 연금전환 종신보험을 판매함으로써 불완전판매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현재는 해당상품의 판매가 중단된 상황이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고령화 비중이 높은 홍콩에서는 2019년 5월부터 공적보증기관을 통한 생명보험 역담보대출제도를 시행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홍콩과 같이 공적보증기관을 통한 사망보험금 역모기지 제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21년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의 55세 이상 중고령자 중 종신보험을 보유한 980명을 대상으로 비례오즈 로짓 모형을 이용하여 사망보험금 역모기지제도에 대한 이용의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주택연금 가입의향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택연금 가입에 대한 자녀의 태도가 긍정적이면서 병원비 방문회수가 잦을수록 사망보험금 역모기지 가입의향은 높았다. 결국, 사망보험금 역모기지제도는 주택연금 가입의향과 비례함을 알 수 있으며 의료비 지출에 대비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의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평균수명 연장으로 사망보험금의 경제적 가치는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을 해소를 위해서는 주택 및 농지와 마찬가지로 공적보증기관을 통한 사망보험금 역모기지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p>	
Memo		



2022  
KOREA  
INSURANCE  
JOINT  
CONFERENCE

세션별 논문발표

세션 III

기후리스크관리

사회: 이상림 교수 (목포대학교)



발표자	성명	최요한
	소속	서울시립대학교 박사과정
논문제목	한글	IPCC 기후 리스크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국내 태풍으로 인한 리스크 평가 및 전망
	영문	Risk assessment and prospect with tropical cyclone in Korea using climate risk framework of IPCC
공동연구	박 찬(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논문초록 (Abstract)	<p>인위적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변화된 기후는 여러 부문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발생빈도 및 강도가 커지고 있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피해들을 리스크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는 기후리스크를 위험, 노출, 취약성 및 반응 인자에 따라 평가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용이하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기후리스크에 적용하기 위하여 국내 발생하는 태풍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리스크 평가를 위해 리스크 발생 요인 및 피해 대상에 따른 피해손실을 경제적 가치로 제시하는 CLIMADA(CLIMate ADAptation) 모델을 활용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이러한 모델을 이용하여 태풍에 대한 리스크를 평가하였으며, 미래 기후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2050년까지 태풍으로 인한 리스크를 전망하였다. 연구 결과, 지역별로 태풍 리스크에 대한 적응능력, 노출빈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로 인해 지역별 실제 태풍 발생빈도 및 강도와 다르게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기후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고려할 때, 리스크로 인한 피해가 높게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태풍으로 인한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p>	
Memo	이 연구는 2022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과제번호: 2019K1A3A1A78112973)	

발표자	성명	정광민
	소속	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논문제목	한글	단계적 태풍 리스크 예측 모형과 기후변화 영향 분석연구
	영문	A stepwise approach to predicting tropical cyclone risks with an analysis on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공동연구	감종훈(포항공과대학교 환경공학부), 이승준(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석사과정)	
논문초록 (Abstract)	<p>본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한반도 태풍의 경제적 피해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단계적 머신러닝 접근법을 제안한다. 먼저 1)태풍의 물리적 위태(hazard)를 지리 및 사회경제적 데이터와 결합하여 지역별 손실액 예측 모델을 생성한다. 다음으로 2)격자 단위의 기후데이터를 사용하여 기후변화 경향성을 반영한 미래 시점의 물리적 위태를 예측한다. 이를 손실액 예측 모델에 활용하여 지역별 손실액을 비교한다. 각 단계에서 사용된 머신러닝 모형은 전통적 통계모형(multiple linear regression) 대비 예측력이 향상된 성능을 보였다. 또한 일부 지리적 요인(제방 및 구거면적)이 태풍 손실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행정구역별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태풍 위험지도를 제공하였다. 기후변화로 인한 50~100년 후의 한반도 태풍 위험을 예측한 결과, 태풍의 경제적 손실은 최대 1.22~1.7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재)보험사에게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의 물리적 위태 변화와 관련 손실액을 예측하는 절차적인 방법론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그들이 적절한 재무 계획과 시장 상품 개발로 기후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p>	
Memo		

발표자	성명	박상진
	소속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논문제목	한글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연안침수 리스크관리를 위한 적응전략 성능 평가
	영문	Performance evaluation of adaptation strategy for coastal flood risk management due to climate change impacts
공동연구	손원민(Michigan State University), 박 용(서울대학교), 이동근(서울대학교)	
논문초록 (Abstract)	<p>기후변화는 우리나라의 홍수 빈도와 강도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다른 머신러닝 기법(Random Forest, Artificial Neural Network, k-Nearest Neighbor)을 활용하여 RCP(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 대표농도경로) 기후 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우리나라 연안지역의 미래의 잠재적인 침수확률이 높은 지역을 예측하였다. 또한 적응전략(녹지 및 방파제)의 적용에 따른 연안 침수 위험 확률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연구의 결과, 적응전략의 적용 전과 후의 위험 확률 분포에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었으며, 미래의 잠재적인 연안침수의 위험을 완화하는 효과는 적응전략, 지리적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2050년을 예측한 결과, 적응전략으로 녹지가 방파제보다 약간 더 효과적임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자연기반전략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또한,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삼면의 지리적 및 기후적 특성이 다르다는 특성이 있다. 삼면의 연안침수 위험성을 비교해본 결과, 남해안이 동해안과 서해안보다 연안침수 위험이 더 높게 나왔으며, 적응전략의 적용 시 그 효과도 더 큰 것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연안침수의 위험확률은 도시화율이 높을수록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적응전략의 적용을 하지 않게 되면 미래에 더 큰 부담의 위험을 안게 된다는 것을 분석을 통해 알게 되었다. 이는 향후 연안도시의 인구 및 사회경제적 활동이 증가할 것을 예상했을 때 이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선 지역적 특성에 따른 적응대책 마련이 필요하다.</p>	
Memo		

발표자	성명	유인상
	소속	한국환경연구원
논문제목	한글	홍수 예보 임계치 및 영향평가 결과를 활용한 홍수 리스크 평가
	영문	Assessing flood risk using threshold for flood warning and impact assessment
공동연구	정휘철(한국환경연구원)	
논문초록 (Abstract)	<p>본 연구에서는 위해성, 노출성, 취약성으로 구성된 리스크의 개념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229개 기초 지자체별 홍수 리스크를 평가하고 지도로 작성하였다. 리스크의 개념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정립한 개념을 적용하였다. 리스크 평가 및 지도 작성을 위한 시간적 범위는 기준연도로서 21세기 전반기인 2001~2020년, 미래연도로서 중반기인 2021~2040년을 선정하였고, 기상청 HadGEM3-RA 모델에 의한 RCP 기후변화 시나리오 4.5와 8.5 강수량자료를 통해 위해성을 산정하였다. 지역의 지형, 입지, 공간 특성 등에 의해 산정되는 노출성, 취약성의 경우 최근의 자료(20년 이전)를 통해 구축하였다. 위해성은 하천홍수(river flood)와 도시홍수(urban flood)로 구분하고 하천과 도시의 홍수방어를 위한 설계강우량을 임계값으로 결정하고 미래에 이 값을 초과하는 강우량의 심도(severity)와 빈도(frequency)를 대응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였다. 노출성 지표는 홍수 위험 지역에 위치한 건축물, 농경지, 도로 면적과 인구수로서 영향평가 결과인 환경부 홍수위험지도를 활용하여 위험대상의 규모를 산정하였다. 취약성 지표로 민감도를 나타내는 과거 침수면적 비율과 불투수면 비율, 적응능력을 나타내는 하천개수율과 노후 하수관로 비율 지표를 선정하였다. 계층화분석(AHP)을 통해 위해성, 노출성, 취약성 지표의 가중치를 산정하였고, 지표 간의 연산을 통해 리스크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리스크 평가 결과를 통해 현재 하천 및 도시의 홍수방어 설계기준이 미래에 적정한지 검토할 수 있으며 홍수 위험지역의 원인을 분석하여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p>	
Memo	<p>※ 본 논문은 한국환경연구원에서 환경부의 수탁과제(역무대행)로 수행된 「기후변화 적응정보 생산 및 취약계층 지원(2022-001-05)」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p>	



2022  
KOREA  
INSURANCE  
JOINT  
CONFERENCE

세션별 논문발표

세션 IV  
리스크관리

사회: 김현수 교수 (순천향대학교)



발표자	성명	이준혁
	소속	한국화재보험협회
논문제목	한글	보험 시장의 손해 저감을 위한 위험 관리에 대한 연구: 스프링클러설비를 중심으로
	영문	A Study on Risk Management for Loss Reduction in Insurance Market: Focusing on Sprinkler Equipment
공동연구		
논문초록 (Abstract)	<p>화재보험은 특수건물할인, 우량할인, 소화설비할인 등 화재보험 요율 체계를 통하여 보험료에 차등을 두고 있으며, 보험계약자의 위험 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특수건물 같은 경우에는 신체손해배상특약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여 인명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제도화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 제도적 장치는 피해액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지만 제천 스포츠센터나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와 같은 대규모 인명 피해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따라서, 인명 안전을 위하여 소방관계법 규 및 건축법 등 관련 법규가 최근 다수 개정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관련 설비들에 대한 기술 개발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p> <p>본 연구에서는 손해 저감을 위한 위험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소화설비가 보험금 등 피해 절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해외에서는 소화설비 중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에 따른 재산손해 감소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 절감 효과에 대한 각종 문헌 발표와 분석 자료가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소화설비 중에서도 스프링클러 설비에 초점을 맞춘 경제적 효용 성까지 개략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스프링클러 설비 등의 소화설비할인은 결국 화재보험뿐만 아니라 재산종합보험까지 확대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다.</p> <p>덧붙여, 기존의 스프링클러 설비가 갖고 있는 장점은 유지하고 인명 안전에 대한 개념을 추가하여 현재 개발하고 있는 스프링클러 신제품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자 한다. 이는 스프링클러 산업뿐만 아니라, 보험 산업에서의 인명 피해 감소에 따른 배상책임의 부담 완화 및 화재 시 대피자의 인명 안전 강화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p>	
Memo		

발표자	성명	조재훈
	소속	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박사과정
논문제목	한글	데이터 유출 위험에 대한 공간적 상관성 및 사회 경제적 영향 분석 연구: 미국 사례 중심으로
	영문	Spatial dependency and socio-economic impacts on data breach risks: Nation-wide analysis in U.S.
공동연구	정광민(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논문초록 (Abstract)	<p>본 연구는 데이터 유출 사건이 공간적으로 상관관계의 여부와 만약 그렇다면 어떤 사회 경제적 요인이 데이터 유출 사건을 유발하는지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내 발생한 데이터 유출 사건에 관한 자료(Privacy Rights Clearinghouse)와 자치주(county) 단위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관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공간적 상관성에 관한 전역적/국지적 Moran's I Statistics를 통해 데이터 유출 사건 빈도에서 자치주 단위의 공간적 상관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발견하였다. 또한, 패널 데이터(panel data)의 특성을 고려, 패널 회귀분석(panel regression)을 기반으로 공간 시차모형(spatial lag model), 공간 오차모형(spatial error model) 및 공간 혼합모형(spatial autoregressive combined model)을 사용하여 데이터 유출 사건 발생빈도의 공간적 상관성에 관한 인구와 평균 소득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밝혀냈다. 본 결과는 인구가 많거나 부유한 자치주에 인접한 지역이 데이터 유출 사건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공간적 상관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캘리포니아, 뉴욕)과 핵심 데이터 유출 리스크인 해킹 유형의 발생빈도에 관한 사회경제적 요인의 공간적 영향력을 분석하였는데, 소득 요인이 전반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1)사이버 리스크 보험의 언더라이팅에 있어서 지리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2)상대적으로 리스크에 더 많이 노출된 지역에 효과적인 사이버 보안 관련 정책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p>	
Memo		

2022  
KOREA  
INSURANCE  
JOINT  
CONFERENCE

세션별 논문발표

세션 V  
연금

사회: 양준모 교수 (연세대학교)



발표자	성명	유종성
	소속	가천대학교
논문제목	한글	국민연금의 트라일레마, 해결방안을 찾아서
	영문	The trilemma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Searching for a solution
공동연구		
논문초록 (Abstract)	<p>본 연구는 더 내고 덜 받는 모수개혁으로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밝히는 데서 출발한다. 노후소득 유지를 통한 소비 평탄화와 소득재분배를 통한 빈곤해소의 두 목표를 다 달성하면서 동시에 국민연금 재정수지의 균형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한 트라일레마(trilemma)에 봉착하기 때문이다. 노후 소득의 유지는 강제 저축이자 보험으로서의 국민연금이 포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소득재분배 기능과 재정 안정화 중 하나를 포기해야만 한다. 두 대안의 검토 결과 국민연금에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A급여를 분리해내는 구조개혁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임을 밝힌다. 즉, 국민연금 A급여를 기초연금과 통합하여 기본소득 방식의 보편적 기초연금 또는 마이너스 소득세 방식의 차등지급형 기초연금으로 개편하고, 국민연금은 소득 또는 기여에 비례하는 수익비 1의 보험수리적으로 공정한(actuarially fair) 사회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p>	
Memo		

발표자	성명	김태일
	소속	고려대학교
논문제목	한글	국민연금 개혁 대안 모색
	영문	
공동연구	신영민(고려대학교 박사과정)	
논문초록 (Abstract)	<p>이번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을 천명하였다. 국민연금 개혁 목표로는 지속가능성 확보가 우선이겠지만, 보장성 강화 역시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지금까지 논의된 보장성 강화 대안으로는 두 가지가 대표적이다. 하나는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초연금을 확대하는 안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대안 대신 강력한 보편적 크레딧을 통한 전 국민 연금수급권 확보 및 수급기간 연장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 대안이 기존 대안보다 우월한지는 논증한다.</p> <p>이를 위해 우선 국민노후보장패널을 이용하여 소득대체율 인상 대안과 본 연구 대안의 효과성을 시뮬레이션하여 비교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 대안이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우월함을 보인다. 다음으로 기초연금 인상은 현재 노인을 위해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본 연구 대안으로 대체되는 것이 스스로 노후대비를 한다는 측면에서 우월함을 보인다.</p>	
Memo		



발표자	성명	정재철
	소속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도시보건정책본부
논문제목	한글	일본 공적연금 일원화 과정의 특징과 시사점
	영문	Characteristics and suggestions in the process of unifying public pensions in Japan
공동연구		
논문초록 (Abstract)	<p>일본 공적연금제도는 어떻게 일원화되었고 그 특징은 무엇이며 한국 연금개혁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p> <p>일본은 2017년 10월부터 연금제도일원화법이 시행되면서 소득보장제도 중 하나인 연금제도의 일원화를 달성했다. 1985년 기초연금법이 도입되면서 모든 국민이 1층의 기초연금의 적용을 받으면서 1단계 통합을 완성한 지 약 32년 만에 일반 근로자가 가입하는 후생연금과 공무원이 가입하는 공제조합이 보험료 부과체계와 급여에서 통일된 기준으로 연금사업을 운영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정액부담·정액급여의 1층의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의 2층의 후생연금, 그리고 유기연금의 3층의 직역연금과 퇴직연금 등 3층 구조의 공적연금체제가 완성되었다.</p> <p>반면, 한국은 국민연금을 통해 자영업자와 근로자가 하나의 제도에 가입해 있지만 공무원과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별도의 공적연금제도에 가입해 있다. 일본과는 달리 2000년에 건강보험제도가 통합되었지만 연금은 아직 분리된 상태인 것이다</p> <p>일본의 공적연금의 일원화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특징을 갖게 된 일원화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제도의 통합이라는 일원화의 경험을 가진 한국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p>	
Memo		



2022  
KOREA  
INSURANCE  
JOINT  
CONFERENCE

세션별 논문발표

세션 VI

보험규제와 법

사회: 최병규 교수 (건국대학교)



발표자	성명	임 준
	소속	보험연구원 금융제도연구실
논문제목	한글	보험산업 사업구조개편에 관한 연구
	영문	A Study on the Reorganization of Insurance Businesses
공동연구	이승주(보험연구원)	
논문초록 (Abstract)	<p>본 연구에서는 국내현황과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①법률 제도, ②시장 기반, ③지원 정책의 3가지 측면에서 국내 보험산업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p> <p>먼저, 제도 측면에서는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규제당국의 승인만으로 기업분할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보험업법에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보험업법에는 기업분할과 관련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법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데, 이럴 경우 사실상 기업분할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p> <p>두 번째로, 시장 기반의 경우 해외사례를 참고할 때 구조조정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수요 측면의 전문기관이 필요하다. 전문적인 수요기관 육성을 위해 시장 기능을 통한 접근법과 정부가 직접 참여하는 2가지 접근법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국내 시장 규모와 초기 시장인 점을 감안할 때, 후자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제안한다. 부실채권시장의 공적 구조조정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처럼 시장이 활성화되기 이전까지는 런오프 전문 공사 설립을 통해 정부가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p> <p>세 번째로 지원 정책의 경우에는 조세에 초점을 맞추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의해 계약이전을 할 경우 인수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이전받는 경우 순부채액(부채가액-자산가액)을 법인세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비슷한 유형의 과세특례를 계약이전 시장이 활성화되기 이전까지는 사전적 구조조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경우에도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p>	
Memo		

발표자	성명	정원석
	소속	보험연구원
논문제목	한글	
	영문	The Effects of Regulations on Incomplete Sales Incentives
공동연구		
논문초록 (Abstract)	<p>We analyze the incomplete sales effect on insurance agents' benefits and regulations' effect on incomplete sales incentives using insurance sales data. We find that agents with incomplete sales earn 16% more income than agents without incomplete sales which means agents have an incentive to misreport the information. To reduce the incentive of incomplete sales, the insurance company introduced regulations. Our analysis shows that the regulations reduce incomplete sales benefits, and the incentive of incomplete sales almost disappears. This paper suggests the importance of agents' incentive schemes and the effect of regulations.</p>	
Memo		

발표자	성명	조규성
	소속	협성대학교 금융보험학과
논문제목	한글	자동차보험 약관의 '마약·약물운전' 조항의 해석
	영문	Interpretation of the 'Drug/Medication Driving' Clause of the Automobile Insurance Policy
공동연구		
논문초록 (Abstract)	<p>최근 마약이나 위험약물,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의 남용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는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자동차보험 약관의 자기차량손해의 면책사유에는 구체적인 약물명은 명기되어 있지 않고 단지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에 대해서는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2022년 1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개정으로 '음주, 무면허운전' 외에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에 대해서도 피보험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p> <p>문제는 마약·약물운전의 경우 음주운전과 같이 해당 운전에 대한 객관적인 수치(예컨대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운전)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고, 약관에서는 단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정의 규정과 '마약·약물운전'에 대한 정의 규정만을 두고 있어 이와 관련된 해석에 따라 많은 다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당 약관 규정의 올바른 해석에 대해 우리와 가장 유사한 법제와 약관을 가진 일본의 사례를 비교 분석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논의는 약관의 '마약 또는 약물 등'과 '마약·약물운전'의 조문 해석으로 나누어 정치하게 검토해 보고자 한다.</p> <p>최종적으로는 약관문언이나 도로교통법 규정과의 관계에서 볼 때 이들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했을 때 발생한 사고에 대해 동 조항은 적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위험 약물 중 소지나 사용이 위법한 지정 약물에 한정해서,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치료 목적이 아닌 마약 복용과 같이 남용한 경우 한정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약관을 개정함으로써 약물복용 운전의 면책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p> <p>이를 통해 ① 보험실무에서 다툼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자동차보험 약관의 '마약·약물운전'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향후 약관해석과 관련해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② 보험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서도 보험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③ 약관해석과 관련해 해당 면책조항 혹은 사고부담금과 관련해 약관규제법의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사전적으로 약관의 개정을 통해 자동차보험 제도의 운영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할 수 있게 되고, ④ 종국적으로 피해자 보호 및 피보험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게 된다.</p>	
Memo		





2022  
KOREA  
INSURANCE  
JOINT  
CONFERENCE

세션별 논문발표

세션 VII  
보험계리1

사회: 전용범 부회장 (한국보험계리사회)



발표자	성명	이민하
	소속	성균관대학교 박사과정
논문제목	한글	외화변액연금 보증옵션의 가치
	영문	Foreign variable annuities and fund protection
공동연구	이항석(성균관대학교), 하홍준(Saint Joseph's University)	
논문초록 (Abstract)	<p>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금융시장 간의 거래가 활발해 짐에 따라, 외국 자산 및 환율 변동성 (foreign equity and FX volatilities)에 투자가 가능한 상품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외환 상품과 관련된 파생상품은 외국 자산과 환율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결정이 쉽지 않다. IFRS 17이 도입되면서 모든 보험사들은 최저보증이 포함된 변액연금처럼 보험상품에 옵션이 내제된 경우 내제옵션의 가치를 공시해야 하는데, 만약 해외 자산에 투자가 되었다면 내제옵션의 가격산정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p> <p>최저보증이 포함된 변액연금의 가격은 콜 또는 풋옵션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옵션의 기초자산의 가치는 외환으로 측정되나, 급부는 환율에 의하여 자국 화폐로 지급되는 quanto option의 가격산정을 다룰 것이다. 특히 환율에 대한 최저보증을 포함한 joint quanto option을 이용하여 환율에 대한 리스크 역시 관리하고자 한다.</p>	
Memo		

발표자	성명	전희주
	소속	동덕여자대학교 정보통계학과
논문제목	한글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강상태에 따른 암질병발생 위험도 분석에 관한 연구
	영문	A Study on The Analysis of Disease Risk According to Health Status Us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Big Data
공동연구	최경진(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논문초록 (Abstract)	<p>최근 들어 국내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의 질병발생 위험도를 측정하는 모형 개발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를 보험상품에 적용하는 보험회사도 등장하였다. 또한 보험소비자의 편의와 보험소비 확대를 위해 간편고지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 코호트2.0 DB를 이용하여 한국인의 주요 질병인 암에 대하여 2015~2019년 중 건강검진을 받은 대상자를 중심으로 개인별 건강상태(건강검진결과 등)에 따른 질병 발생/수술/입원 등의 통계적 예측모형을 개발하여 전체 일반대상자와 간편고지보험 대상자의 상대위험도를 비교하고자 한다.</p> <p>발생 유무의 이항 반응변수에는 일반화선형모형(GLM) 중 로지스틱회귀모형을, 입원 및 수술 건수의 빈도 반응변수에 대해서는 음이항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최적의 예측값을 산출하였다. 사망, 입원, 수술의 담보 유형에 따른 모형별로 유의하게 선택된 설명변수들은 모두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는 대상 담보와, 성별 등에 따라 영향을 주는 설명변수의 정도에 따라 질병발생 위험도는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된다.</p>	
Memo		

발표자	성명	최종인
	소속	한국신용정보원
논문제목	한글	채무보유 사망자의 대출 현황과 신용생명보험을 통한 리스크관리
	영문	The statistics of debt-holding deaths and its risk management via credit life insurance
공동연구	백 철(한국신용정보원)	
논문초록 (Abstract)	<p>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대출채무를 보유한 채로 사망할 경우, 유족은 동 채무를 상속하게 되므로 가계안정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금융회사 등 채권자 또한 상속 포기로 인한 부실채권화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p> <p>본 연구에서는 채무보유 사망자의 사망 당시 대출현황을 살펴보고, 신용생명보험을 통한 리스크관리 사례를 살펴보았다.</p> <p>신용생명보험을 통한 리스크관리는 대출자의 가계안정에 긍정적 효과가 있으며, 금융회사는 대출채권의 원활한 회수를 가능하게 한다. 아울러, 신용대출 현황 통계에 기반하여 신용생명보험 시장 규모를 추산하였다.</p>	
Memo		



2022  
KOREA  
INSURANCE  
JOINT  
CONFERENCE

세션별 논문발표

세션 VIII  
보험계리2

사회: 임종국 부회장 (한국보험계리사회)





발표자	성명	안재윤
	소속	이화여자대학교 통계학과
논문제목	한글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험료 측정과 편향에 관한 연구
	영문	The Neural Ratemaking System in Insurance and the Bias
공동연구	김경원(이화여자대학교)	
논문초록 (Abstract)	<p>보험 상품의 요율 결정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선형적 프로세스와 사후적 프로세스로 구성된다. 이 요율 결정 시스템은 통계적 예측 시스템으로서 사전 위험 분류 과정에서 보험 계약자의 관찰 가능한 특성에 의해 먼저 보험 계약자의 요율을 결정한 다음 사후 위험 분류 과정에서 청구 이력에 의해 조정되는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후 위험 분류는 사전 정보를 활용하지 않으며 사후 위험 분류는 청구 이력에만 의존한다.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우리는 선형적 및 사후적 프로세스가 있는 모든 요율 결정 시스템이 "이중 계산 문제(Double Counting Problem)"라고 하는 편향 문제를 겪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이러한 이중 계산 문제를 우회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요율 결정 시스템을 살펴보고 편향 문제가 제거된 상태에서 최대 정확도를 달성하기 위해 신경망 방법에 이 방법을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한다.</p>	
Memo		

발표자	성명	장 철
	소속	한양대학교 금융보험학과
논문제목	한글	거치연금과 주택연금을 고려한 개인의 생애 소비·투자에 관한 연구
	영문	Lifetime consumption and investment with deferred annuities and reverse mortgage
공동연구	Iqbal Owadally, Andrew Clare (City, University of London)	
논문초록 (Abstract)	<p>본 연구는 노후 소득보장의 수단으로써 주택연금과 거치연금의 유무에 따른 최적 소비·투자방안의 변화를 살펴본다. 다기간확률계획법(multi-stage stochastic programming)을 활용하여 생애 소비·투자 문제에 적용하였다. 해당 모형은 전통적인 이론모형이나 계산모형에서 구현이 힘들었던 보험상품과 거래비용 및 소득세와 같은 제약을 반영할 수 있다. 주택소비와 비주택소비를 구분한 Cocco (2005)의 효용함수에 사망률을 반영하여 상속효용도 고려하였다. 또한, 주택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여 대출, 월세, 지분 소유 등의 계약형태를 고려한다. 주택가격을 포함한 자산가격 모형은 Vasicek-GBM을 사용한다. 본 연구는 일반적인 시장 상황 하에 개인의 최적 소비·투자행태를 살펴볼 뿐만 아니라, 근래 주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이자율 상승압력이 있는 상황에서,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상품의 역할을 제고한다.</p>	
Memo	한국보험계리사회, 2021년 계리 연구 지원 사업 선정 과제	

발표자	성명	이가은
	소속	성균관대학교 박사후연구원
논문제목	한글	리베이트 옵션과 활용
	영문	Rebate options and its applications
공동연구	이항석(성균관대학교), 정힘찬(Simon Fraser University)	
논문초록 (Abstract)	<p>이 논문에서는 배리어를 일반화시켰을 때의 리베이트 옵션 공식을 유도하고 이를 응용한 EIA와 변액연금상품 등의 예시를 제공한다. 리베이트 옵션은 기초자산이 배리어를 터치할 때 보상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한다. 배리어의 형태가 계약기간동안 일정한 경우에 대한 공식은 선행연구가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배리어가 일정할 때뿐만 아니라 piecewise constant인 경우의 공식을 유도하였다. 이를 통해 임의의 배리어도 근사적으로 응용하여 해당 옵션가격을 구할 수 있다. 특히 Knock-out 배리어 옵션일 때, 옵션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점을 활용하여 조기행사가 가능한 American options 가격을 근사할 수 있다. 이는 변액연금의 조기행사 특약과 만기해약에 대한 가격을 분리하여 계산하는 데에 응용할 수 있다.</p>	
Memo		





[기획세션\_주제 1]

# 공·사 건강보험 데이터와 미래경영

이 현 복 교수 (전주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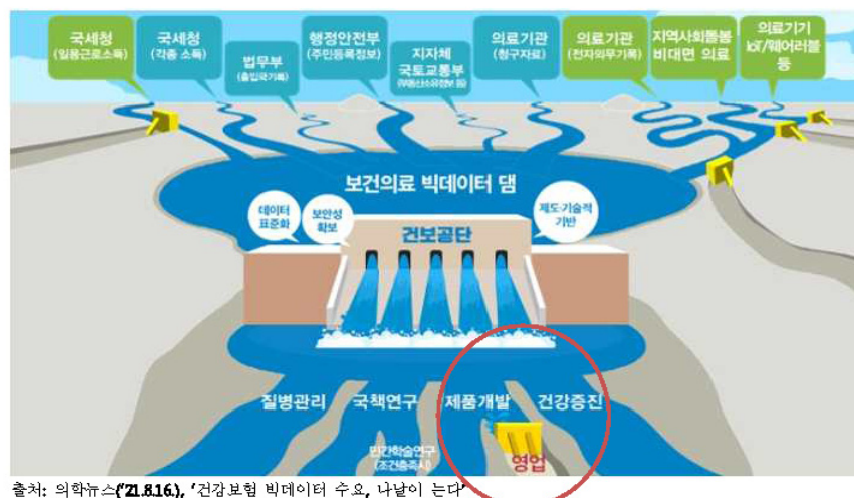
[22.8.19. 한국보험학회 하계학술대회\_이현복]

## 공·사 건강보험 데이터와 미래경영

- (1) 서론(기본개념)
- (2) 본론(공·사 건강보험 데이터 이슈)
- (3) 결론(발전방안; 미래경영)

- 1 -

### □ '20.8.5. 데이터 3법 시행 그리고 건강보험 Big-Data



- 2 -

**(1) 서론(기본 개념)**

○ **Data 3법**

-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일컫는 말
-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삭제; 기업의 정보 활용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됨
- '18년.11월. 국회 발의, '20년.1월. 본회의 통과, '20.8월. 시행
- 가명정보(추가 정보의 결합 없이는 개인을 식별 할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 개념 도입; **가명정보를 이용하여 신사업 전개** 허용
  - 개인정보의 암호화나 가명 처리 등의 안전조치 마련, 독립적인 감독기구 운영 등을 요구하는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대응
  - \* GDPR에서는 식별정보의 경우 사전동의, 비식별정보의 경우 사후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상업적 목적 등의 모든 연구에서 가명정보 활용 가능**

○ **건강보험 Big-Data(NHISS; 건강보험자료 공유서비스)**

\* 근거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관련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개방과 공유, 자료처리 지원

- **국민건강정보DB**: 전 국민의 자격 및 보험료, 건강검진결과, 진료내역, 노인 장기요양보험자료, 요양기관 현황, 암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정보 등 **1조 3천억 건의 Big-Data**
- **표본연구DB**: 전국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요도가 높은 데이터**를 표본 추출하여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조치한 후 **정책 및 학술연구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규격화한 데이터 셋**

구분	표본수(천명)	구축기간	자료건수(천건)	내용
표본조사DB	1,025	2002~2019(18개년)	2,619,397	전 국민을 대표하는 약 100만 명의 표본연구DB(전국민의 2%)
건강검진조사DB	515	상동	2,087,629	만40~79세의 건강 검진 수검자 중신으로 재유이됨, 검진결과 등을 분석할 수 있는 표본연구DB(전국민의 10%)
노인조사DB	558	상동	2,749,945	2002년 기준 만60세 이상 노인층을 중심으로 구축한 표본연구DB(전국민의 10%)
영양개선조사DB	84	2008~15(8개년)	233,688	2008~2012(5년) 출생자 중 영양개선사업 1~2차에 참여한 1만 이상 수검한 영양조사 DB(전국민의 10%)에 대해 각 연도별 5% 이상 무작위추출
생활개선조사DB	185	2007~15(9개년)	368,226	'07.12월 말 기준 건강보험 자격 유지자 중 만15~64세의 여성 직장가입자 약 360만 명의 5% 무작위 추출



- **맞춤형연구DB:** 공단이 수집, 보유, 관리하는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자료를 정책 및 학술 연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자의 연구목적에 따라 추출, 요약, 가공하여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데이터 셋(DB를 열람 및 연구 분석할 수 있는 PC가 설치된 공단 내의 장소인 빅데이터 분석센터에 통계분석 툴을 이용·제공)
- **건강질병지표:** 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만성질환의 위험요인뿐 아니라 발생 및 합병증 과정을 포괄하여 체계적으로 산출한 만성질환 관리 지표

### □ 민영건강보험(제3보험)

- 개념: 사람이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로 인해 **상해**를 당했을 때 또는 질병이나 상해가 원인이 되어 **간병**이 필요한 상태를 **보장**하는 **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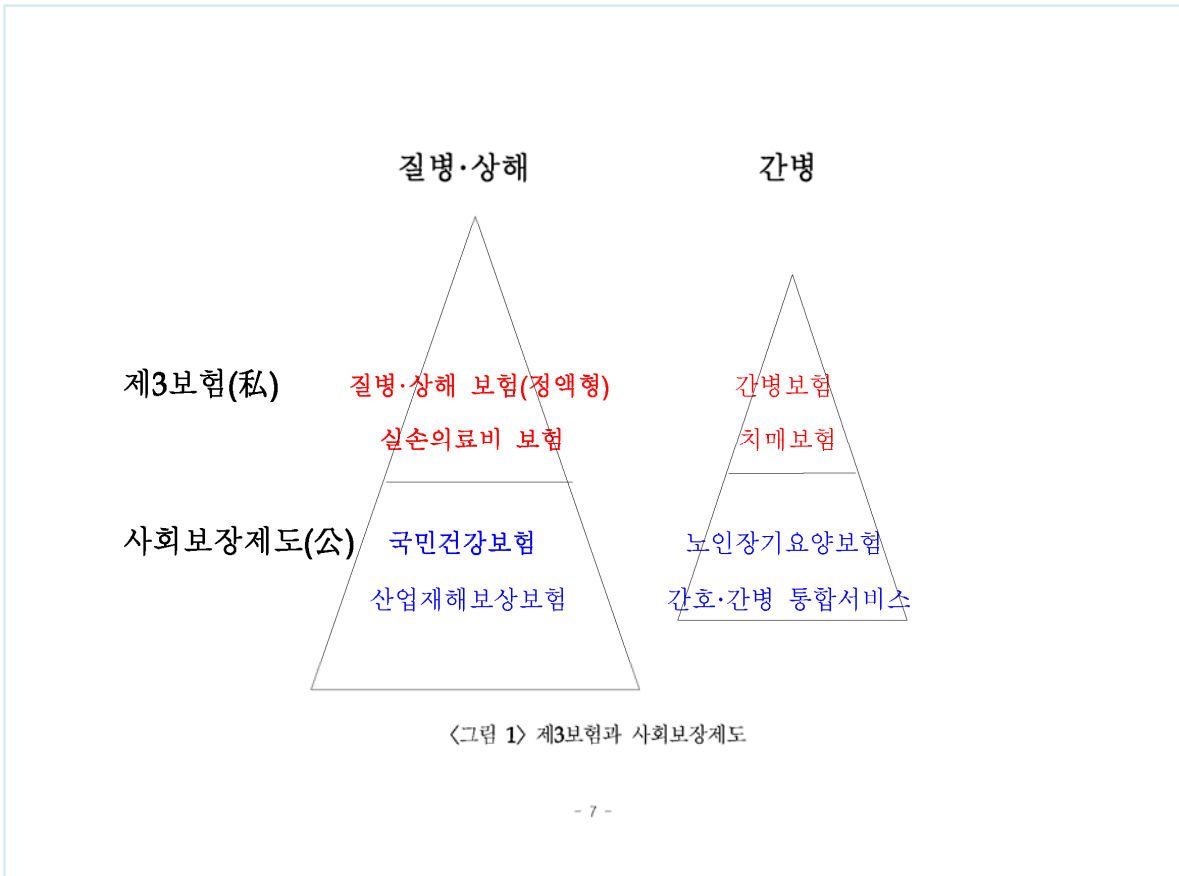
☞ 「보험업법」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1호

다. 제3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급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 「보험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383호) 법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1. 상해보험계약 2. 질병보험계약 3. 간병보험계약**

- \* 제3보험은 '03년 5월 「보험업법」의 전면개정을 통하여 새로이 정의된 보험업의 한 종류, 「보험업법」 제10조 검열·검영 제한 적용 예외
- \* 제3보험 종류: 실손의료비 보험, 질병보험(암보험, C보험, 질병진단비 보장보험, 수술과 입원 담보 특약 등), 상해보험(상해 사망 보장보험, 후유장애 보장보험, 상해담보 위험 보장보험, 여행레저위험 보장보험, 기타 상해위험 담보특별약관(ex, 업무 중 상해, 학교생활 중 상해 등), 간병보험(간병급여 보험, 치매보험 등)



### □ 국민건강보험

- 개념: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

☞ 「국민건강보험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민건강보험의 법적근거는 「헌법」 제34조 제1항, 제2항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국가의 사회복지 증진의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사회보장(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정의, 「국민건강보험법」에 있음

□ 公私 건강보험 보장범위와 보장형태

- 질병, 상해에 대한 의료비 및 간병 등의 건강비용 보장
- 국민건강보험의 현물 및 현금 급여, 민영건강보험의 실손 및 정액 보장
- **19년 기준 건보 보장률 64.2%**(경상의료비 중 정부재원 58.2%, OECD 평균 73.5%)

〈그림 2〉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보장범위



출처: 이현복 등(2016), 건강보험 정책이슈, 국민건강보험공단, p.3.

4) 비교

- 민영건강보험(제3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비교

〈표 4〉 제3보험과 국민건강보험 비교

구분	제3보험	국민건강보험
운영(보험자)	민영기관(보험회사, 공제 등)	공직기관(건보공단)
목적	개인적 필요	기본적 의료, 산재 보장
가입방식	임의가입	강제가입
급여수급권	계약적 수급권	법적 수급권
보험료	위험률에 따른 부담	소득(능력)에 따른 부담
급여수준	보험료수준에 따른 차등급여	균등급여
보장대상	법정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 간병비 등	질병, 부상에 대한 의료비
보상한도	있음 (ex,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입원: 연간 5천만원, 통원: 최대 180회, 1회당 30만원, 처방조제비: 1건당 5만원)	없음
⋮	⋮	⋮

출처: 이현복(2017), 공사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 p.23.

○ 가입 및 시장규모 차이

※ '20년 한국의료패널, '21년 건강보험 통계연보, '21년 금감원 보도자료 활용

- 민영건강보험(정액형 및 실손형) '19년 가구기준 가입률 **77.6%**(실손형 40.0%, 혼합형 55.6%) vs 국민건강보험 '21년 **97.1%**(의료급여 29%)

\* '22년 언론 보도자료: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약 3,800만명

- 민영건강보험 '19년 수입보험료 기준 약 ?조원('21년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액 약 11.8조원 vs 국민건강보험 '21년 수입기준 약 **79.2조원**(보험료수입 66.4조원)

○ 수지율 VS 손해율

- '19년 기준 **진보 수지율**(지출 약 70.9조/ 수입 약 68.1조) **104.1%**

- '21년 3분기 기준 손보사 **실손보험 손해율 131.0%**

· '17년 123.2%, '18년 121.8%, '19년 134.6%, '20년 130.5%

- 11 -

(2) 본론(공·사 건강보험 데이터 이슈)

1) 공·사 건강보험 이슈

○ (NHI) **부과체계**(이원화, 고소득 free rider 등), **지불체계**(총액관리 어려움 등), 보험자의 심사권한 분리, **의료전달체계**(대형병원 쏠림 현상, 주치의 제도 등) **비급여 관리**, (고령화) **노인의료비 급증** 등

○ (PHI; 실손의료보험 중심) **높은 손해율**(올해 실손의료보험 3.5조~3.9조 손해?) but 보험료인상 어려움, 보험금 지급심사 어려움, 반사이익, 신상품으로의 전환, **비급여 관리**, 수익 확대, 지속가능 발전방향(정책보험?, 보충형?, 대체형보험?), **상품구조 개선**, 소비자보호 등

○ (공통이슈)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비급여 관리**, **건강관련 데이터 활용**,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심사 심평원 활용,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등

- 12 -

## 2) 정부의 정책방향

### ○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66], [25]

**| 국정과제 [66]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중 |**

- (필수·공공의료 강화)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감염병·응급·중증외상·분만 등 필수·공공의료 인력·인프라 강화를 통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확충 대책을 마련하고, 필수과목 지원 확대 및 전공의 등 의료인력 역량 강화
  - 지역별로 역량있는 공공병원 및 민간병원을 육성하고, 예산·공공정책 수가·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필수의료 지원 확대
- (건강보험제도 개편)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하여 보험료 부과 부담을 완화하고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등 관리 강화
  - 재산공제 확대, 피부양자 적용 기준 강화 등 부과체계 개편('22.下)을 실시하고, 실거주 목적 주택 관련 부채는 보험료 부과대상 재산에서 공제
  - 약품비 지출 적정화 및 부정적 의료이용 방지 등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와 건강보험 재정 정부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비급여 관리 내실화

- 명확한 보장성 강화(목표보장률) 제시 없으나 **보장성 확대 예상**
- **비급여 관리 강화** 예상

**| 국정과제 [25]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중 |**

- (제약 바이오)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메가펀드 조성, 의사과학자 등 융복합 인재양성, 바이오헬스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개선을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
  - 인공혈액, 유전자 치료 등 차세대 첨단의료기술 확보, 공적 임상연구 확대
- (디지털 헬스) 국민 개인이 자신의 의료·건강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맞춤형으로 제공
  - 의료 마이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 역동적 경제를 위한 약속으로 **보건의료 산업에 대한 지원확대** 예상
- 규제개선을 통한 혁신을 통해 **'규제완화'** 빠른 속도로 추진 예상
-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마련을 통해 개인의 **건강정보를 이용한 '산업'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

### 3) 디지털 환경 변화와 건강데이터의 활용

- 4차 산업혁명(정보화 시대), 코로나19 등 디지털 환경의 급속한 변화
  - AI, 네트워크, 사물인터넷(IoT), 모바일 등의 정보기술 활용 확대
  -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유 국민건강정보DB)와 더불어 새롭게 개인 디지털 데이터가 급속도로 양산됨에 따라 안전한 공유와 활용 문제의 발생
  -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활용 및 선호도의 급속 확산
  - 디지털기반 상품과 서비스 활성화; 기업의 사업모델의 변화 필요
- 디지털 환경 변화는 보험산업의 생태계 변화 및 경쟁심화를 이끌 것으로 예상
  - (업의 주된 목적) 손실의 재무적 복구에서 예방·관리 중심으로
  - (데이터 활용) 정형화된 통계의 활용에서 (고객의) 실시간 데이터 활용으로
  - (디지털 역량 보유 기업의 생존)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보험업 진출로 인한 보험산업의 경쟁 심화와 경쟁구도 변화

- 15 -

- 보험사의 건강데이터 활용
  - 보험산업의 근간은 데이터에 있음
    - 상품의 개발: 빈도(위험율), 심도(손실액)에 대한 경험통계 필요
    - 보험의 인수, 보험금의 지급, 보험유지 및 관리 등에 관련 데이터 필요
  - 생보 및 제3보험 상품 개발을 위해 국민통계와 해외 통계 사용
    - (초기) 해외 특히, 일본의 위험율을 사용하여 상품개발
    - (현) 개발원 및 대형보험사의 경험통계 사용하여 상품개발
    - (그러나) 현재에도 새로운 위험에 대한 상품 개발 시 경험통계의 부족으로 해외 통계에 의존하여 상품 개발 중(21.7. 보험연구원, CEO Report)
  - 신상품 개발과 신사업(헬스케어 등) 진출을 위한 데이터 활용역량의 증대와 함께 관련 기업에 투자 및 제휴 확대 필요
    - 관련 규제 완화에 따른 득·실을 고려하여 대책마련이 필요함

- 16 -

- **심평원의 경우 '15년.7월.부터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을 운영**하기 시작하여, 보험사는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신상품을 개발·제공 중
  - 「공공데이터법」에 근거하여 국민에 개방 누구나 이용가능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영리 목적을 포함한 자유로운 활용 보장**
  - 건강데이터(건강정보)를 활용하여 신상품(ex, 중기간질환, 중기폐질환, 중기심질환)을 개발하여 소비자에게 제공(17.12 보험연구원, KiRi Report)
-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의료데이터 보험사 제공은 거부 중**1)
  - 심평원의 '표준환자 DATA Set' 제공과 다르게 건보공단은 데이터 미제공
  - 건보공단 내규에 따른 14인으로 구성된 '**국민건강정보자료제공 심의위원회**'에서 **제공거부**; '21년.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현대해상, KB손보 등의 자료 제공 신청에 대해 '미승인' 결정
  - 복지부는 '23년. 의료 개인정보 플랫폼인 '마이 헬스웨이'를 시행 추진 중이나 보험사의 데이터 접근 가능여부는 불확실함

1) 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는 특정시점의 데이터 셋만 보유한 심평원 데이터와 다르게 개인의 진료정보와 건강검진 정보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의 잠재력이 매우 큼. 시민단체 등의 '국민건강 보장을 위해 축적한 공공의료 데이터를 보험사 이익에 활용하는 것은 데이터 구축, 운영 취지와 맞지 않다는 주장과 가명처리라고 하여도 개인의 동의가 꼭 필요하다는 주장' 등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보험사의 건강데이터 활용에 관련된 규제

- **진입 규제:** (보험사) 업의 신규 인허가, 자회사 지분을 및 업종, 부수/겸영업무 신고 등 **엄격한 규제**(「보험업법」 및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VS (플랫폼)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로 인정시 일정기간 금융업 **라이선스 취득 없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또는 부서업무 수행 허용**
- **건전성 규제:** (보험사) BIS 자기자본 비율, RBC 지급여력 비율, 순자본비율 등 **엄격한 자본 규제** VS (플랫폼)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로 인정시 일정기간 금융업 **라이선스 취득 없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또는 부서업무 수행 허용**
- **영업행위 규제:** (보험사) 「보험업법」, 「금융소비자보호법」, 「공정거래법」 등에 따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엄격한 영업행위 규제** VS (플랫폼) 영업행위 규제 거의 없음(기존 사업을 통해 고객데이터 확보 후 금융데이터와 결합한 부가적 사업영위가 용이함)

○ 해외사례

- (EU)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16.4. 채택, '18년.5월. 시행
  - 개인정보 처리의 6대 원칙(적법성, 공정성, 투명성, 목적의 제한, 최소 수집, 정확성, 보관의 제한)과 가명처리(pseudonymisation)와 익명처리(anonymisation) 규정; 가명정보는 동의 절차 필요, 익명정보는 동의 없이 제3자 제공 가능
  - 정보의 활용보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에 더 중점(개인정보처리자의 다양한 의무와 의무 이행에 대한 입증책임 부여)
- '21년.2월. 'ePrivacy 지침(EPD; ePrivacy Directive) 채택
  - GDPR의 구체성 강화, 규정의 적용 사업자 확대 및 콘텐츠, 쿠키, 메타데이터 등에 대한 효과적인 개인정보보호 방안 모색

- (US) '건강보험 정보의 이전 및 책임에 관한 법률(HIPAA;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96년. 시행
  - 주 연방법으로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의료관련 행정 및 금융 자료의 전자교환을 표준화하는 법률
  - HIPAA에서는 일상적인 의료업무 차원에서 수집되는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를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건강정보의 이차적 이용'으로 정의한 후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개인정보보호규칙; Privacy Rule)
  - '보호건강정보(PHI; Protected Health Information)'<sup>2)</sup>의 엄격한 보호
  - '식별가능하지 않은 건강정보(De-identified Health Information)'의 활용 및 공개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약도 존재하지 않음

2)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건강정보로 인구통계학적 자료(이름, 주소,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등과 같은 공통 식별자 포함)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의미. 첫째, 개인의 과거, 현재, 미래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상태, 둘째, 각 개인이 제공받은 의료서비스(진료기록), 셋째, 의료서비스 이용에 따라 각 개인이 지급한 금액.



- 정보 제공자 본인의 요구 등 6가지<sup>3)</sup> 목적이나 상황에 한정하여 각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건강정보의 이용과 공개 허용
- '09년, 건강정보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경제 및 임상건강을 위한 건강정보기술 법(HITECH;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for Economic and Clinical Health Act) 제정; 비식별 정보의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가능 및 산업 활용 장려; 개인정보의 유출 및 남용 사례 많아짐
- '20년, 이후 캘리포니아주의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법(CCPA;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과 같이 개인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통제권이 강화되는 추세임
- IT 기업(구글, 애플 등) 등에 주도로 공개 데이터세트, 건강정보의 비식별 정보 조치 후 데이터의 활용 및 제3자 제공 등이 이루어짐

3) ① 정보 제공자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② 치료, 의료비 납입, 건강관리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사항, ③ 개인의 동의나 반대 의사 표명이 있는 경우, ④ 우발적인 정보의 이용 및 공개(최소한의 필요에 한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⑤ 공공의 이해에 부합하는 경우, ⑥ 연구목적, 공적건강보험 운영을 위해 제한된 자료의 이용

- (日本) '15년 '일본재흥전략 개정(日本再興戰略 改訂)', '17년 '데이터 헬스개혁 추진본부' 설치 등을 통해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정부 성장전략으로 추진
- '17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익명정보의 활용과 정보보호를 동시 추진
- '18년 '차세대의료기반법' 제정·시행을 통해 의료정보의 제3자 제공시 사전 본인 동의 필요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익명가공 정보의 경우 2차적 활용<sup>4)</sup>을 자유롭게 함
- '20년 '건강보험법 등의 일부 개정 법률'을 통해 익명처리 정보의 민간기업 활용을 허용함; 익명정보의 2차적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4) 1차적 활용: 본인의 치료에 사용 등 위득한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 2차적 활용: 본래의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익명정보에 한함)

### (3) 결론(발전방향; 미래경영)

#### 1) 공·사 건강보험의 대립구도가 아닌 협력방안 모색

##### ○ 협력이 가능한 부분

- 국민건강증진 및 국민의료비 감소(ex, 의료비 및 건강비용 등 총액관리 등)
- 데이터 및 정보교류
  - 건보공단에서는 급여(+법정본인부담금)자료, 검진자료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민영보험사에서는 비급여 자료 풍부
  - 서로의 정보교류가 단절되어 공단은 '진료비 실태조사', '한국의료패널' 등을 통해 비급여 자료 수집을 위한 비용지출 많음; '21년부터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 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및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 개정안에 따라 의원급을 포함한 의료기관 비급여(616개 항목) 진료비용 정보를 연단단위로 조사 공개; 의료계 반발이 강하며, 자료제출 약 40% 수준

- 23 -

- 재난의료비 지원사업으로 건보에서는 실손보험가입자 정보필요, 실손보험에서는 법정본인부담금 상한제 대상자 및 금액에 대한 정보 필요)
- 건강보험 데이터 제공을 통한 신상품개발,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등 신사업 및 산업의 발전 동력으로 활용; 개인정보보호 vs 데이터 활용 활성화
- (심평원의) 보험금 지급심사 기능 활용, 보험금 청구 간소화 등

##### ○ 민영건강보험의 공공성 강화 VS 자율성 강화

- 공공성이 강화 된다면 민영건강보험의 국민건강증진, 국민의료비 관리 관점에서 표준약관 제정 및 개정 필요
  - 건강보험의 보장성변화와 연동된 표준약관 수립과 새로운 상품 개발 및 전환유도
  - 정부와 협력하여 비급여의 표준화 필요(코드, 진료수가 등)
    - ※ 비급여의 표준화 및 표준가격 등이 마련되어야 함

- 24 -

- 공공성이 강화되어 공보험의 보충적 정책보험의 성격으로 전환 될 경우 건강보험 데이터 공유를 통한 상품개발, 가입 장려 등 필요
- 보험사기, 과잉의료이용을 야기하는 비급여 파악하여 특약으로 구분(현재 3대 특약과 같이 횡수, 총액 제한)하여 기본형 + 특약 A + 특약 B + 특약 C 등의 형태로 구매할 수 있도록 상품개발(의학적 필요성 높은 비급여 만을 포함하여 기본형으로 구성 필요); 기본형 상품은 가입장려, 가입개방 등 모색
- **세제혜택 강화 필요**; 현 보장성보험 연간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 금융상품으로써 **자율성을 강화**할 경우 상품개발 및 보험료 산정 및 조정에 대한 민영보험사의 자율권 강화
  - 특히,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의 과다의료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법정본인부담금의 보장 축소, **고급의료 등 비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 강화 필요**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연동된 질병·상해보험의 표준약관 마련 필요
  - 가입의 지속성 및 유지율 향상을 위한 **평준보험료 방식 실손의료보험 개발<sup>5)</sup>**
  - 건강데이터를 활용한 민영건강보험의 **새로운 상품 개발 및 시장 개척(ex, 헬스케어 서비스 등) 필요**
- 보험사와 건강데이터 활용 및 디지털 사업 활성화
- **가명정보에 대한 영리목적 사용 및 활성화 필요함 but 엄격한 개인정보보호 규정**
  - **플랫폼 기업과의 규제차이 해소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 소액보험 활성화를 위해 1사 2라이선스 적용필요<sup>6)</sup>
  -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보험금 지출감소와 국민건강증진

<sup>5)</sup> NHI, PHI 모두 현재의 구조로는 고령화 시대 의료비부담 등을 대비하기에는 한계에 있음. 특히, 소득에 따라 올라가는 자연보험료 구조의 상품은 소득 낮은 노인에게는 보험료 부담이 매우 큼. 아울러 젊어 가입한 보험의 유지도 어려운 실정(실손 5년 이상 유지율 50% 미만).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60%대 수준에 머물고, 급격한 보장률 상승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개인의 책임, 기업의 책임이 현 수준보다는 높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됨. 독일의 고령화 적립금과 같이 소득 수준이 높은 청년층에 노인이 돼서 사용하게 될 의료비를 미리 적립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시시하는 바가 큼

<sup>6)</sup> 세널과 상품을 중복하여 허용하지 않는 규제정책으로 인해 모회사와 자회사 간 영업세널과 보험종목 중복이 불가능한 상황임. 시장의 빠른 변화속도에 부응하도록 새로운 규제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감사합니다.



[기획세션\_주제 2]

# 디지털금융의 발전과 보험산업의 법적 개선방안

유 주 선 교수 (강남대학교)







# 디지털금융의 발전과 보험산업의 법적 개선방안

유 주 선 (강남대학교 정경학부 교수)

## I. 서론

서비스업 중심으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ICT 기술과 대형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이 광고, 유통, 정보통신, 미디어, 운송, 여가, 교육 업종 등 다양한 분야로 자신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규모가 큰 네이버, 카카오 등 회사들은 지급 결제와 은행 부문에서 단기간에 다수 고객을 확보하고 보험의 영역까지 자신의 영업 범위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소비자 편익 확대라고 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부작용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先 시장의 지배력을 확대한 후, 後 기존 산업의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장 질서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시장 리스크 확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에 기존 보험사는 그동안 두텁게 쌓여온 규제로 인해 자체 플랫폼 등 활용한 서비스 및 비금융 서비스 진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험사는 자체 플랫폼 통한 다양한 비금융 서비스 분야의 진출을 하고자 한다. 하지만 자회사에 대한 규제, 부수·겸영업무 규제, 1社 2라이선스 불허 정책 등과 관련된 법규는 기존 보험회사의 다양한 서비스 운영 가능성에 대한 불투명성을 야기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보험 영역에서 발생하는 주요 규제 정책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법적 해소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 II.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보험업 진출과 영향

### 1. 금융업 진출 배경

대규모 고객 기반을 가진 거대 정보기술(IT) 회사들이 있다. 이는 중소형 핀테크 기업과는 구별되는 기업으로, 전자상거래, SNS메신저, 검색엔진 등의 고유사업을 기반으로 확보한 브랜드 인지도, 고객정보 등을 통해 금융 및 지급결제 분야로 진출하고 있다.

플랫폼을 통해 축적한 금융데이터, 전자상거래 데이터를 통해 금융업에 진출한 이들 기업들은 신규 서비스를 창출하고 기존 비즈니스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비대면(언택트) 금융거래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미래 잠재고객으로서 MZ세대가 편리함과 개별 맞춤형 특화 서비스에 우선 가치를 두면서 금융산업의 디지털화를 추동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현상은 다시 플랫폼 이용자의 편익을 제고한다는 실익도 있지만, 플랫폼의 선순환 기능을 통해 그 지배력을 확대하게 하는 특징을 갖는다. 또한 이들 기업의 금융업에 대한 진출은 소비자 편익 제고 및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 정책에 기인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2. 보험업 진출 현황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의 가능한 금융영역으로는 은행(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한 여수신업무, 지급결제(간편결제)로서 선불·직불·후불서비스가 있고, 증권(CMA 제휴) 및 보험사와 제휴 또는 자회사를 통한 금융서비스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업자들에는 네이버, 카카오, 토스(비바리퍼블리카) 등을 들 수 있다.<sup>1)</sup> 이들 기업들은 보험 영역에도 점진적으로 그 범위와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데, 2020년 6월 네이버퍼이낸셜은 '엔에프(NF)보험서비스' 상호로 법인 등록을 마친 상태다. 서비스의 범위에는 보험대리점업, 통신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콜센터마케팅 서비스업 등이 포함된다. 아직 보험업라이센스를 획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보험사 제휴를 통해 사실상 보험대리점(GA)과 같은 유통을 전담할 것으로 생각된다.

금융위원회가 카카오손해보험(가칭)의 보험업 진출을 공식 허가했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4월 13일 카카오손해보험이 자본금 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 경영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해 허가 결정을 내렸다.<sup>2)</sup> 기존 보험사가 아닌 신규 사업자가 디지털 보험사 허가를 받은 것이다.<sup>3)</sup> 보증보험과 재보험을 제외한 손해보험업의 모든 종목을 다루게 된다. 소비자가 참여하는 'DIY 보험', 플랫폼 연계 보험 등의 상품을 포함하여, 동호회·휴대전화 파손 보험, 카카오 키즈 연계 어린이보험, 카카오 모빌리티 연계 택시 안심바이크·대리기사 보험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카카오손해보험은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를 통한 간편 가입, 플랫폼을 통한 간편 청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속한 보험금 지급 심사 등은 기존 보험사와 비교하여

1) 김시홍, “빅테크플랫폼의 보험산업 진입과 법적 과제”, 보험법연구 제16권 제1호, 한국보험법학회, 2021, 163면 이하. 미국의 빅테크들은 보험산업에 직·간접적(기존 보험사 제휴)으로 진출하면서 보험시장에서 보험 유통 플랫폼이나 디지털 기술 개발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아마존케어는 헬스케어를 통한 건강보험으로 진출을 모색하는 등 가장 활발하게 보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2013년 최초 온라인 보험사인 중안보험을 필두로 텐센트, 알리바바 등 대형 IT 기업들이 보험사업에 적극 뛰어든다. 그 중에서 텐센트가 가장 활발히 보험영역에 진출하고 있다. 텐센트는 중안보험, 타이캉온라인, 이안보험, 안신보험이 온라인 보험 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텐센트가 설립한 인터넷보험사 중안보험은 생활밀착형 보험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카카오페이의 보험 진출 모델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카카오손해보험의 자본금은 1천억원이며, 출자자는 카카오페이(60%)와 카카오(40%)로서, 카카오손해보험은 통신판매 전문 보험회사(디지털 보험사) 방식으로 운영된다.

3)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교보생명)과 캐롯손해보험(한화손보)도 디지털 보험사로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았으나 기존 보험사의 허가 사례에 해당한다.



강점이 될 것이다.

핀테크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토스(비바리퍼블리카) 또한 토스증권과 토스인슈어런스(보험)를 설립하며 종합금융플랫폼으로 도약하고 있으며, 토스뱅크도 2021년부터 런칭을 시작했다. 토스는 기존 보험사와 MOU를 통해 토스 플랫폼에서 보험사들의 상담·가입 창구를 제공하고 있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도 우회적으로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토스(토스인슈어런스)는 플랫폼과 GA의 전문설계사 조직간 협업(대면설계사 매칭서비스)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설계사 전용 영업지원 앱 ‘토스보험파트너’에 11만명(생보·손보 등록 설계사의 약 25%, 2021.12 현재)이 넘는 설계사들이 가입하고 있다.

### 3. 영향

COVID-19로 인해 가속화 되고 있는 금융산업의 디지털화 추세 속에서 매년 금융부문에 사업 비중을 넓혀 가고 있고, 네이버나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기업의 보험업에 대한 비중과 그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sup>4)</sup> 하지만 대형 플랫폼 기업의 사업범위의 확대는 약탈적 가격인상이라든가 타 업체로의 비용 전가 등 다양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OO택시의 경우 택시 호출시장 80% 이상 점유後 일방적으로 요금을 인상한다든가, OO커머스의 경우 입점업체에 경쟁물 가격인상 요구나 판촉비용 전가 등은 대표적인 부작용 사례에 해당한다. 이러한 부작용 외에도 다양한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진입 규제와 관련된 문제점이 있다. 플랫폼 기업의 경우 혁신금융서비스로 인정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 보험업법이나 자본시장법 등의 적용을 면제받게 되는데, 금융업 라이선스를 취득 받지 않으면서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또는 부수업무 수행을 허용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건전성 규제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발생한다. 보험회사의 경우 BIS(자기자본)비율, 순자본비율, RBC(지급여력)비율 등 엄격한 자본 규제를 준수해야 하나, 플랫폼 기업의 경우 대체로 낮은 수준의 건전성 규제가 이루어진다. 보험업법의 규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용정보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 등으로 규율을 받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영업행위 규제에서도 발생한다. 보험회사의 경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해상충 방지, 정보교류 차단, 투자권유나 불공정거래 금지, 상품설명이나 공시 등에 있어서 엄격한 영업행위 규제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의 경우 금융업 라이선스 없이 유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영업행위 규제를 거의 받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이 대형 플랫폼사와 전통 금융사 간 진입 규제, 건전성 규제, 행위 규제의 영역에서, ‘금융혁신’이라는 명분 아래 플랫폼 기업은 금융업 영위시 금융사보다 낮은 수준의 규제 적용을 받는 ‘기울어진 운동장’ 현상이 발생한다.

4) 현재 이들 3사 기업은 국내 4대 금융지주사 시가총액을 합한 것과 맞먹거나 이를 상회하는 규모로 확대되고 있다. 2017년 인터넷전문은행을 보유한 카카오는 계열사 102개를 거느리고 금융 및 플랫폼 산업으로 확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 III. 보험회사의 디지털신사업 진출과 주요 법적 과제

#### 1. 플랫폼사와 금융업 간 진입 규제 정책의 차별성

보험업의 경우 신규로 인·허가 사항, 자회사 지분율 및 업종, 부수업무와 겸영업무 신고를 함에 있어서 보험업법과 금융산업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된다. 이하에서는 고유 업무와 부수업무, 겸영업무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 가. 고유 업무

고유 업무는 해당 금융권역이 취급하는 핵심 업무로서 감독당국의 별도 인허가를 얻지 못하면 타 권역이 영위할 수 없는 업무이다. 보험업의 고유 업무는 보험계약의 인수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보험업법 제2조 정의 규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 <보험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7. 31., 2021. 4. 20.>

1. 생략함.
2. “보험업”이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引受),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말한다.
3. “생명보험업”이란 생명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손해보험업”이란 손해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제3보험업”이란 제3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6. 이하 생략함.

보험업법 제2조 제2호는 ‘보험업’, 제3호는 ‘생명보험업’, 제4호는 ‘손해보험업’, 제5호는 ‘제3보험업’ 용어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이를 규정들을 통하여 보험업의 고유한 업무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임을 알 수 있다.

##### 나. 부수 업무

부수업무는 본업은 아니지만 고유 업무에 수반되는 업무로서 보험회사가 부수업무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를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보험업법 제11조의2 제1항).

<보험업법>

제11조의2(보험회사의 부수업무) ① 보험회사는 보험업에 부수(附隨)하는 업무를 하려면 그 업무를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공고된 다른 보험회사의 부수업무(제3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것은 제외한다)와 같은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부수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8.>

③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하는 부수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부수업무를 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1.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치는 경우
2. 보험계약자 보호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은 그 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받은 부수업무 및 제3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한 부수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본조신설 2010. 7. 23.]

부수업무의 범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현 보험업법과 달리, 舊보험업법 제16조를 보면 부수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舊보험업법 시행령><sup>5)</sup>

제16조 (겸영·부수업무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4.2.28, 2005.3.31, 2008.6.13>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
2.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채권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

②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신탁업을 말한다. <개정 2005.3.31, 2008.7.29, 2009.12.29>

③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수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4.3.22, 2005.3.31, 2008.2.29, 2008.6.13, 2008.7.29>

5)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

<p>1. <u>보험업과 관련된 업무(다른 보험회사를 위하여 그 보험업에 속하는 거래의 중개 또는 대리를 하는 업무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u></p> <p>가. 보험수리업무</p> <p>나. 보험사고 및 보험계약 조사업무</p> <p>다. 보험에 관한 연수 · 간행물 · 도서출판업무</p> <p>라. 보험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또는 소프트웨어 등의 대여 및 판매 업무</p> <p>마. 보험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업무</p> <p>바. 자동차와 관련된 교육, 상담 그 밖의 부가서비스 업무</p> <p>사. 재공제 업무(영위하고 있는 보험종목과 관련된 재공제 업무에 한한다)</p> <p>아. 그 밖에 가목 내지 사목에 준하는 업무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업무</p> <p>2. <u>보험회사가 소유하는 인력 · 자산 또는 설비 등을 활용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u></p> <p>가.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 · 주선 또는 대리업무</p> <p>나. 대여금고 업무</p> <p>다. 수입인지 · 복권 · 상품권 등의 판매대행 업무</p> <p>라. 기업 및 보험계약자에 대한 상담 및 위험관리 업무</p> <p>마. 금융 · 경제관련 조사 및 연구업무</p> <p>바. 다른 금융기관의 업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수행방법 또는 업무수행을 위한 절차상 본질적 요소가 아니면서 중대한 의사결정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위탁한 업무</p> <p>사. 기업의 후생복지에 관한 상담 및 사무처리 대행업무</p> <p>아. 보험회사의 설비 등을 활용한 광고대행 업무</p> <p>자. 그 밖에 가목 내지 아목에 준하는 업무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업무</p> <p>3. <u>「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 및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u></p> <p>4. <u>「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금이체업무(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결제중계시스템의 참가기관이 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대표참가기관을 경유하는 방식의 전자지금이체업무는 제외한다)</u></p> <p>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수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준 등 그 밖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

현 보험업법에 따른다면, 고유 업무에 수반되는 업무로서 부수업무는 네거티브 방식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폭넓은 개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부수업무는 저성장·고금리 상황에서 보험회사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서 간과할 수 없는 영역에 해당한다. 열거식에서 포괄식, 이른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을 했으나, 부수업무의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과거 사례로 판단하고 있다.

다. 겸영 업무

타 권역의 고유 업무라도 개별적으로 감독당국의 별도 인허가를 받으면 ‘겸영업무’의 형태로 영위가 가능하다. 겸영업무는 보험업법 제11조와 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열거하고 있다.

<보험업법>

제11조(보험회사의 겸영업무) 보험회사는 경영건전성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제1호 또는 제3호의 업무를 하려면 그 업무를 시작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업무로서 해당 법령에서 보험회사가 할 수 있도록 한 업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으로서 해당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등이 필요한 금융업무
3. 그 밖에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금융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전문개정 2010. 7. 23.]

<보험업법 시행령>

제15조(겸영 가능 보험종목) ① 법 제10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이란 다음 각 호의 보험을 말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재보험과 보증보험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일부만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와 제3보험업만을 경영하는 보험회사는 겸영할 수 없다. <개정 2012. 7. 24., 2021. 6. 1.>

1.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설정하는 계약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및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퇴직보험계약

② 법 제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3보험의 보험종목에 부가되는 보험”이란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제3보험의 특약 형식으로 담보하는 보험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을 말한다. <개정 2018. 6. 5.>

1. 보험만기는 80세 이하일 것
2. 보험금액의 한도는 개인당 2억원 이내일 것
3. 만기 시에 지급하는 환급금은 납입보험료 합계액의 범위 내일 것 [전문개정 2011. 1. 24.]

제16조(겸영업무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0. 8. 4.>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

2.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채권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
  4.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업무[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결제중계시스템(이하 이 호에서 “결제중계시스템”이라 한다)의 참가기관으로서 하는 전자자금이체업무와 보험회사의 전자자금이체업무에 따른 자금정산 및 결제를 위하여 결제중계시스템에 참가하는 기관을 거치는 방식의 전자자금이체업무는 제외한다]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 ② 법 제1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2. 7. 24., 2022. 4. 19.>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항에 따른 투자자문업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7항에 따른 투자일임업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신탁업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
  7.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6호에 따른 외국환업무
  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9. 보험업의 경영이나 법 제11조의2에 따라 보험업에 부수(附隨)하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영위하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
- ③ 법 제1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른 금융기관의 업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수행방법 또는 업무 수행을 위한 절차상 본질적 요소가 아니면서 중대한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위탁한 업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2008년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업무가 추가되었고 최근에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6호에 따른 외국환업무가 겸영업무에 추가되었다. 전자자금이체업무가 겸영업무로 추가되면서 수익증권 판매에 수반되는 수익증권 환매대금 이체 등의 업무가 전자자금이체업무에 포함되었다. 그리고 2020년 ‘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영위하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가 겸영업무로 새롭게 도입되었다.

#### 라. 투자 제한

금산분리원칙이라 함은 금융과 산업이 분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동 원칙에 따라,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회사가 금융자본을 소유하는 것이 금지되고, 금융회사 역시 비금융회사 지배를 금지하는 것이. 보험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다른 회사의 지분에 15% 이상 출자가 불가능하다.



### <보험업법>

제109조(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보험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다만, 제11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이 의제되거나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자회사의 주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8.> [전문개정 2010. 7. 23.]

보험업법 제115조와 동법 시행령 제59조(자회사의 소유)를 들 수 있다. 동 법령에 따르면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 금융업’,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업’, ‘보험계약의 유지·해지·변경·부활 등을 관리하는 업무 및 보험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中’ 시행령에서 정하는 22개 업종에 한하여 자회사 소유가 가능하다.

보험회사는 혁신적인 고객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타산업과 차별화된 플랫폼 기반의 생활서비스 제공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투자제한의 규정으로 인하여 현재 해당 서비스의 영위가능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이다(보험업법 제109조).

#### 마. 문제점

보험업의 경우 보험업법 관련 규정에 명시된 고유 업무, 부수업무 및 겸영업무에 한정된다. 고유 업무로는 보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지급 등이고, 부수업무로는 고유 업무에서 부수되는 업무이다. 열거식으로 되어 있던 것을 현 보험업법은 포괄식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과거 사례를 토대로 하여 판단하고 있다. 겸영업무로는 유동화자산 관리, 전자자금이체, 집합투자업 등 14개 업무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플랫폼 기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별도의 규제사항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플랫폼 기업들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인정받는 경우 일정 기간 자본시장법을 포함하여 보험업법 등의 적용 면제의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금융업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고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또는 부수업무 수행을 허용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

또한 플랫폼 기반의 생활서비스 제공 등 보험사의 축적된 전문성과 핀테크·주택관리·반려동물 등 스타트업이 지닌 창의성을 결합하여 새로운 보험산업의 성장동력을 모색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상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비금융회사에 대해 15% 이상의 지분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이 점은 제휴 및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을 야기하게 된다. 반면, 플랫폼 기업은 아무런 제약없이 이러한 사업을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다. 이 점에서 플랫폼 기업에 비하여 보험회사의 차별성이 드러나고 있다.

플랫폼 기업이 보험회사와 같은 디지털금융업무를 영위함에도 동 기업은 전혀 규제를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금융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차별적 규제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 점은 시급히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2. 보험회사 자회사 소유 및 가능 업무

보험사의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자회사, 겸영업무 제한 등의 규제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도록 한다.

### 가. 현 법률규정

보험회사가 자회사를 소유하고 업무를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115조와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규정되어 있다.

#### <보험업법 제115조>

제115조(자회사의 소유)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 다만, 그 주식의 소유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 등을 받은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그 주식의 소유에 관한 사항을 요건으로 설립 허가·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3. 11., 2020. 2. 4., 2020. 12. 8.>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 경영하는 금융업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
3. 보험계약의 유지·해지·변경 또는 부활 등을 관리하는 업무
4. 그 밖에 보험업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보험업의 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8.>

③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8.>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은행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비금융주력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8.>

⑤ 보험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가 업무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

⑥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8.>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 신고 또는 보고의 요건,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8.>[전문개정 2010. 7. 23.]



<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

<p>제59조(자회사의 소유) ① 삭제 &lt;2021. 6. 1.&gt;</p> <p>② 법 제1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lt;개정 2019. 6. 25., 2021. 6. 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외국에서 하는 사업(제3항제15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li> <li>2. 기업의 후생복지에 관한 상담 및 사무처리 대행업무</li> <li>2의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li> <li>3. 그 밖에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보험회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고 보험업과 관련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업무</li> </ol> <p>③ 법 제1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lt;신설 2021. 6. 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험회사의 사옥관리업무</li> <li>2. 보험수리업무</li> <li>3. 손해사정업무</li> <li>4. 보험대리업무</li> <li>5. 보험사고 및 보험계약 조사업무</li> <li>6. 보험에 관한 교육·연수·도서출판·금융리서치 및 경영컨설팅 업무</li> <li>7. 보험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소프트웨어 등의 대여·판매 및 컨설팅 업무</li> <li>8. 보험계약 및 대출 등과 관련된 상담업무</li> <li>9. 보험에 관한 인터넷 정보서비스의 제공업무</li> <li>10. 자동차와 관련된 긴급출동·차량관리 및 운행정보 등 부가서비스 업무</li> <li>11.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위험관리 업무</li> <li>12. 건강·장묘·장기간병·신체장애 등의 사회복지사업 및 이와 관련된 조사·분석·조언 업무</li> <li>13.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조사·분석·조언 업무</li> <li>14. 건강 유지·증진 또는 질병의 사전 예방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업무</li> <li>15. 외국에서 하는 보험업, 보험수리업무, 손해사정업무, 보험대리업무, 보험에 관한 금융리서치 업무,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집합투자업 및 부동산업</li> </ol> <p>④ 법 제11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lt;신설 2021. 6. 1., 2021. 10. 2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업무</li> <li>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li> <li>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및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투융자사업</li> <li>4.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의 업무</li> </ol>
---

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업무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하는 업무
  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업무 및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⑤ 법 제11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자회사를 소유한 날부터 2개월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21. 6. 1.>
- ⑥ 법 제1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회사 소유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 또는 보고를 하려는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 6. 1.>
1. 보험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관리상태가 건전할 것
  2. 자회사의 재무상태가 적정할 것
  3.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자산운용의 비율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⑦ 금융위원회는 법 제1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회사 소유의 승인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승인 또는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6. 1.>
- ⑧ 제6항 및 제7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회사 소유의 승인, 신고 또는 보고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 6. 1. > [전문개정 2011. 1. 24.]

#### 나. 자회사 소유 규제 이유

보험회사의 자회사 규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유가 제시될 수 있다.<sup>6)</sup> 첫째, 타인의 자금으로 보험회사가 자회사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 보험회사가 금융업이나 다른 업종을 자회사로 두는 경우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이나 보험계약자 보호의 문제 발생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셋째, 모회사인 보험회사의 주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업종을 영위하는, 이른바 문어발식 업종 확장을 제한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

하지만 첫째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보험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투자한도의 기준이 자기자본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sup>7)</sup>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 둘째 사항에 대하여는 자회사가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인 경우 유한책임의 원칙에 따라 투자한 만큼만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 보호는 그리 큰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보험업이 자회사를 통하여 일반 제조업 운영 등 문어발식 확장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 할 것이다.

한편, 2019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인하여 핀테크 자회사 소유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이는 은행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금융위가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은행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저축은행업 등 금융업’, ‘은행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된 금융전산업’, ‘열거된 업무 외 그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무’ 등에 대하여 자회사를 인정하고 있다.<sup>8)</sup> 이는 금융지주회사법에도 동일하게 등장한다.<sup>9)</sup>

6) 성대규/안종만, 한국보험업법, 도서출판 두남, 2015, 495면 이하.

7) 예를 들면 보험업법 제106조 제1항 제7호 동일한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는 일반계정에서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은행법은 ‘열거된 업무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무’로, 금융지주회사법은 ‘고유 업무와 직접 관련 또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으로 하여 폭넓게 해석 및 적용하고 있다.

반면, 2019년 보험업법 개정 시 보험업의 경우 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제3호에 “보험업 관련성 또는 효율적인 보험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주로 하는 자회사”를 추가하여 보험회사의 핀테크 자회사 소유가 가능하도록 규정(제59조 제2항)하였지만, 몇 가지 사항만 가능하게 된 것이지 은행법이나 금융지주회사법과 같이 폭넓게 인정하지 못한 모습이다.

#### 다. 비교법적 검토

##### (1) 미국

미국 뉴욕 주의 경우 과거에는 보험회사가 소유할 수 없는 자회사의 범위를 열거하여 은행 등에 소유를 금지하였으나 1998년 보험회사의 자회사업무 규제가 철폐되면서 은행 등을 자회사로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sup>10)</sup> 다만 자회사 투자에 대한 양적제한 규정을 두고 있고, 연방법상 보험회사가 은행을 자회사로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은행지주회사법에 준하는 금융지주회사가 되어야 한다. 보험회사의 업무영역은 보험업 및 그 부수업무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직간접적으로 자신이 지배하는 자회사(subsidiary)를 통해 보다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보험지주회사법은 보험회사의 자회사에 대해, 그것이 합법적인 한, 자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업무영역의 범위를 제한 당하지는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sup>11)</sup>

한편, NAIC 440-1은, 상기 §2A에 대한 대체 조항으로서, 각 주가 보험회사의 자회사 업무영역을 비보험 업무로까지 확대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조항(NAIC 440-1 Alternative §2A)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이 대체 조항에 열거되어 있는 보험회사의 자회사 업무영역에는 i) 보험업무, ii) 보험중개인 및 보험대리점, iii) 자기 계정 또는 그 모회사, 모회사의 자회사, 관계회사 계정 상의 유가증권 투자·재투자·거래, iv) 1940년 투자회사법에 따른 투자회사의 관리, v) 1934년 증권거래법에 따른 브로커·딜러, vi) 투자자문 제공, vii) 계리, 회계, 채권추심 등 보험 관련 서비스 제공, viii) 모회사가 직접 소유·관리할 수 있는 자산의 소유·관리, ix) 보험기능을 수행하는 정부기구의 관리대리인, x) 보험료 납부를 위한 신용공여 등 소비자 금융, xi) 보험업무에 대한 보조업무로 보험감독관이 결정한 업무, xii) 상기 허용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의 소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즉 보험회사의 자회사 업무영역을 비보험 업무(non-insurance business)로까지 확대하는 경우에도 주로 보험 관련 또는 금융관련 업무일 것을 일반적으로 예정하고 있을 뿐, 이것이 비금융 업무(general commerce)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산업자본을 보험회사의 자회사로 직접

8) 은행법 제37조 제2항과 은행법감독규정 제49조 참조

9)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호는 자회사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는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정함에 있어 ‘금융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금융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10) 이성남, “보험회사의 업무영역의 규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8, 147면 이하.

11) 다만, NAIC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는 보험회사의 자회사의 업무영역을 보험업외의 다른 업무로까지 확대할 것인지 또는 보험관련 업무로만 제한할 것인지에 대해 표준법안에서 명확히 규정할 의도가 없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판단 권한은 어디까지나 각 주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배하는 것을 아무런 제약 없이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미국의 보험법은, 연방 은행법과는 달리, 보험회사와 산업자본 간의 결합을 사전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여전히 금산분리 원칙은 보험회사에도 작용되며 사전적 규제가 아닌 사후적 규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은행 규제와 다른 접근방법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 (2) 일본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보험업법상 자회사 대상회사를 열거해 두고 그 이외의 회사는 자회사로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일본 보험업법 제106조 제1항). 소유가 허용된 자회사로 보험업법은 생명손해보험, 소액단기보험회사, 은행, 보험업, 은행업을 영위하는 외국회사 등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외에 종속업무회사, 금융관련업무 자회사, 신규 사업 분야를 개척하는 회사로서 내각부령(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회사 등을 열거하고 있다.<sup>12)</sup>

종속업무는 주로 보험회사의 시설과 인력을 활용한 업무로 다른 사업자의 임직원을 위한 복리후생사무, 물품 구입이나 관리, 직업소개사업, 컴퓨터에 관한 사무업 등 총 24개호로 열거되어 있다. ‘그에 준하는 업무’로 금융청 장관이 정하는 업무 및 그에 부대하는 업무도 영위가 가능하다(일본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6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26호 참조).

‘금융관련 업무’는 보험모집, 보험사고조사, 금융기관의 데이터 처리,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운동시설 등 운영, 건강, 복지 또는 의료에 관한 조언업무 등 총 45개호로 열거되어 있으며, 종속업무와 같이 ‘그에 준하는 업무 내지 부대업무’에 대한 근거조항을 두고 있다(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7호 참조).

나아가 일본은 보험회사에 관한 종합적 감독지침에서 업무범위를 구체화하고 있다. 예컨대, 건강 관련 업무는 “육내 운동 설비 등의 시설 또는 콜센터 등의 기능을 갖추어 전문 지도원, 의료 전문인 등을 배치해, 회원이나 상담자에 대해 건강의 유지·향상에 기여하는 업무”로, 복지 관련 업무로 “건강·의료·간호 등 복지에 관한 컨설팅, 고령자 등의 방문간호” 등을 열거하는 식이다.

일본에서는 최근 저출산 고령화하는 사회 변화 속에서 보험 서비스에 부수하여, 혹은 일체적으로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는 서비스 내용도 변화하고 있어 구체적 수요가 있고 사회적 의의가 있는 경우 자회사 업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 라. 문제점

미국의 경우는 보험회사의 자회사는 은행업무 및 은행 유사업무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업무범위에 대한 제한이 없다. 즉, 보험회사는 직·간접적으로 자신이 지배하는 자회사를 통해 보다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전미보험감독자협의회가 제정한 보험지주회사규제 관련 모델법은 보험회사의 자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업무영역의 범위를 제한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NAIC 440-1 § 2A). 일본 역시 마찬가지이다.

12) 양승현 “보험회사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자회사 범위 관련 법률체계 검토”, KiRi 리포트, 2019. 1. 21. 5면.

우리나라는 보험업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험회사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업무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즉,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 금융업',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업', '보험계약의 유지·해지·변경·부할 등을 관리하는 업무 및 보험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중' 시행령에서 정하는 22개 업종에 한하여 자회사 소유가 가능하다. 이러한 입법태도는 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보험회사가 자회사로 영위할 수 있는 업무범위 관련 유연한 신사업 확장에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 할 것이다.

2021년 6월 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자회사의 소유)의 개정으로 말미암아 자회사의 허용업무에 '건강유지·증진 또는 질병의 사전 예방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업무'인 헬스케어 업무가 새롭게 도입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헬스케어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이익 관련한 모호한 규정에 대한 문제점과 헬스케어 업무에 선불전 자지급수단 발행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된 바 있었다.

### 3. 보험회사 1사 1라이선스 원칙 인정 여부

#### 가. 논의 배경

우리나라의 경우 IMF 당시 다수의 보험회사가 일시에 시장에서 퇴출되는 경험을 하였고, 이후 규제당국은 금융안정성 차원에서 다소 제한적으로 허가하는 방식을 택했다. 우리나라에서 보험산업의 규제 정책은 혁신과 금융안정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담당하고자 한다. 하지만 금융안정성 유지와 관련된 역할 비중이 주요 다른 국가에 비하여 다소 높은 편이다. 제한적인 허가 정책 가운데 대표적인 하나로 금융그룹 내에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각각 1개씩만을 보유하도록 하는 1사 1라이선스 방식을 들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채널 전문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어 생명보험업이나 손해보험업에서 두 개 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교보생명은 온라인 채널 전문 생명보험회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을 자회사로 두고 있고, 한화그룹은 한화손해보험회사 외에 온라인 채널 전문 손해보험회사인 캐롯손해보험회사를 두고 있다.

2003년 보험업법 전면 개정을 통해 업별 허가제도에서 종목별 허가제도로 전환이 이루어졌고, 통신판매 전문보험회사제도가 도입되었고<sup>13)</sup> 2021년 6월 소규모 보험회사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제도를 도입하였다.<sup>14)</sup> 하지만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의 도입은 판매채널과 보험상품 개발과 관련하여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13) 업별 허가제도 하에서는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의 최저자본금이 300억 원이었는데, 보험종목별 허가제도 도입으로 300억 원 이하로 인하가 이루어졌다. 또한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의 최저자본금은 일반보험회사의 3분의 2 수준으로 낮췄다.

14) 보험기간은 1년, 보험금액상한은 5,000만원의 소액단기보험만을 취급할 경우 최저자본금을 20억 원으로 인하한 것이다. 보험산업의 역동성 제고는 '새로운 기업의 진입'과 함께 '새로운 조직 형태의 도입'에 의해 가능한데, 지금까지 허가정책은 주로 전자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최저자본금 인하를 통해 상품이나 채널에 특화된 전문보험회사 소규모 보험회사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 이루어진 것이다.



## 나. 타업권의 경우

### (1) 은행업

과거 시중은행간 M&A의 경우 대부분 합병의 형태를 취해왔는데, 정책적인 동기보다는 규모의 경제와 효율성 등 시장 수요 측면의 동기가 더 강하게 작용하였다. 그러나 일부 지방은행 간 M&A는 합병하지 않고 별도 법인 형태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었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간 M&A와 전북은행과 광주은행 간 M&A의 경우 지역 간 특성 차이로 인해 무리하게 합병할 경우 경영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 법인 형태를 허용하였다. 다만, 최근 발생하는 이슈로는 일반은행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자회사로 보유하는 것을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

### (2) 금융투자업

금융투자업의 경우 2019년 증권회사와 자산운용회사 관련하여 1사 1라이선스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증권회사의 경우 동일 그룹 내에는 원칙적으로 1개의 증권사 설립만을 허용하고, 전문화·특화된 경우에만 복수 증권사를 허용하던 정책을 폐지하고, 그룹 내 증권사 신설·분사·인수를 자유롭게 허용해 주었다. 자산운용회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공모운용사에 대해서는 업무특화 인정 범위 내에서 복수운용사 설립을 허용하던 정책을 폐지하고, 공모운용사에 대해서도 신설·분사·인수를 자유롭게 허용하였다. 또한 사모운용사에 대해서는 2019년 이전에 이미 1그룹 1운용사 원칙이 폐지되어 복수운용사를 자유롭게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IFRS 17과 K-ICS 도입 등 건전성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그 동안 진입규제가 담당하던 금융안정성 유지는 다소 감소되고, 혁신 제고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진입규제 완화 정책으로서 1사 1라이선스 허가정책을 유연화 할 필요가 있다.

## 다. 주요국의 경우

### (1) 미국

미국은 다음 세 가지로 특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룹 내 계열사가 개인시장과 단체시장에 각자 특화된 형태’, ‘그룹 내 계열사가 위험도에 따라 고객을 그룹화하고 고객군별로 특화된 형태’, ‘그룹 내 계열사가 유배당과 무배당 상품별로 특화된 경우’ 등이 그것이다.

메트라이프(MetLife)그룹은 2017년 미국 내 생명보험 사업 가운데 개인시장 관련 사업을 분리하여 별도 법인 Brighthouse Financial을 설립하였다. 메트라이프는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시장에 특화하고, Brighthouse Financial은 개인시장에 특화한 것이다. 메트라이프 그룹의 분사는 상대적으로 요구 자본량이 많은 개인시장 관련 사업을 시간을 두고 매각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현재는 손해보험사업을 매각하였지만, 메트라이프 그룹은 손해보험 관련 9개의 자회사를 두고 ‘MetLife Auto & Home’이라는 브랜드 하에 가계성(Personal Lines)손해보험을 판매하였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대상 고객군을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우량 고객군과 위험도가 높은 비표준(불량)고객군으로 구분하고 계열사별로 특화하였다. 예를 들어, Metropolitan Casualty Insurance는 우량 고객군을, 그리고 Metropolitan

General Insurance Company는 비표준(불량)고객군을 대상으로 자동차보험 판매를 하였다.

뉴욕생명보험의 경우, 모회사인 New York Insurance는 유배당 상품을 중심으로, 그리고 자회사인 New York Life Insurance and Annuity Corporation는 무배당 상품을 중심으로 판매하였다.

## (2) 일본

니혼생명보험그룹은 스마트폰 등에서 생명·손해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채널 전문소액단기보험회사 설립을 위한 준비회사를 2021년 4월 30일 출범하였다. 전통 판매채널 유지를 위해 다이렉트(온라인) 보험업 진출에 소극적이었으나 경쟁 대형사의 다이렉트 소액단기보험의 진출, MZ세대의 디지털 수용과 소액·단순 보장 니즈에 신속 하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모델이 필요하였다.

토쿄해상홀딩스는 복수의 부동산보험 전문소액단기보험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2008년 이래야 소액단기 보험회사를 인수하고 회사명을 도쿄해상미래아로 변경하였고, 2014년에는 도쿄해상West소액단기보험회사를 신설하였다. 모회사는 도쿄해상과 자회사인 소액단기보험회사는 각각 대형과 중소형 부동산회사를 위탁 대리점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소액단기보험회사인 도쿄해상미래아와 도쿄해상West는 각각 관서지역 영업과 관서 이외 지역 영업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SBI홀딩스는 보험회사만을 별도로 지배하기 위해 중간지주회사 SBI Insurance Holdings를 2017년 설립하였다. SBI Insurance Holdings 아래에 SBI 생명보험, SBI 손해보험, 소액단기보험 지주회사(SBI SSI Holdings)를 자회사로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소액단기보험 지주회사 아래에는 5개의 소액단기보험회사를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다.

## (3) 중국

2006년 중국 정부는 연금보험, 건강보험, 책임보험 등과 같은 특정종목 상품공급 확대를 위해 전문보험회사 설립을 허용하였다. 생명보험그룹은 그룹 산하에 종합생명보험회사 이외에 연금전문보험회사와 건강전문보험회사를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다. 중국 보험그룹의 경우 내 동일 보험업 관련 복수의 보험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개는 종합보험회사 1개와 2~3개의 전문보험회사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생명보험업 관련 복수의 보험회사를 보유한 경우 대개 종합생명보험회사 1개, 연금전문보험회사 1개, 그리고 건강전문보험회사 1개로 구성되어 있다.

평안보험그룹은 생명보험업을 중심으로 하는 생명보험그룹으로 생명보험 관련 자회사 3개와 손해보험 관련 자회사 2개를 보유하고 있다. 생명보험 관련 자회사에는 종합생명보험회사인 평안생명보험회사, 연금전문보험회사인 평안연금보험회사, 건강전문보험회사인 평안건강보험회사가 있다.

## 라. 소결

개별회사 차원이 아닌 그룹 차원에서 경영전략상 계열사 간 차별화 내지 전문화가 필요한 경우 1사 1라이선스 허가정책 예외 확대를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온라인 채널 전문화에 한해 적용하던 1사 1라이선스 허가정책 예외를 ‘상품별 전문화’, ‘채널별 전문화’, ‘고객별 전문화’, ‘구조조정 목적의 전문화’

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행 규제는 보험회사의 다양한 온라인 상품개발에 지장을 초래, 혁신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즉, 한화손보 자회사인 캐롯손해보험은 운행거리에 연동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는 혁신적인 자동차보험상품을 개발하여 온라인 판매하고 있다. 1사 1라이선스 정책에 따른다면, 모회사인 한화손해보험은 온라인으로 일반적인 자동차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보험회사가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 다양한 온라인 상품을 개발·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하는 상품이 다른 경우라면 모회사-자회사 간 판매채널 중복을 허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4.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의 도입

##### 가. 현행 규정

###### <보험업법>

제9조(자본금 또는 기금) ① 보험회사는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함으로써 보험업을 시작할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가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험종목의 일부만을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자본금 또는 기금의 액수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집수단 또는 모집상품의 종류·규모 등이 한정된 보험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함으로써 보험업을 시작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1.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을 하는 보험회사(제2호에 따른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는 제외한다):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금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2.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보험금의 상한액, 연간 총보험료 상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1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③ 외국보험회사가 대한민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기금을 제1항 또는 제2항의 자본금 또는 기금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 7. 23.]

###### <보험업법 시행령>

제13조의2(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①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보험금의 상한액, 연간 총보험료 상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다음 각 목의 보험상품
  - 가. 생명보험상품 중 제1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



나. 손해보험상품 중 제1조의2제3항제6호,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보험상품  
 다. 제3보험상품 중 제1조의2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험상품

2. 보험기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3. 보험금의 상한액: 5천만원
4. 연간 총보험료 상한액: 500억원

②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억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 6. 1.]

나. 도입과 한계

2020. 12. 8.자 보험업법 개정시 도입된 소액단기 전문보험회사(미니보험사)는 소규모 자본으로 소비자 실생활 밀착형 소액간단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보험회사이다. 미니보험은 보험료가 소액이고 위험 보장 내용도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간단한 실생활 밀착형 상품을 통칭한다고 할 수 있다.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은 미니보험사의 세부 기준을 신설하고 있다(제13조의2). 금융당국이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이른바 ‘미니보험사’의 문턱을 대폭 낮추었고 2021년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1:1 컨설팅에 나서기도 했으나, 아직 신청한 기업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미니보험 비중이 전체 판매채널 중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고 보험사의 수익성에도 별다른 도움이 안 된다는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IV. 개선방안

1. 자회사 업종 제한의 유연화와 자회사 소유 시 신고요건 완화

가. 업종 제한 유연화

보험회사의 업종 제한을 유연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할 것이다. 은행법은 ‘열거된 업무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무’,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산법은 “고유 업무와 직접 관련 또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자회사 업종을 폭넓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다. 보험업의 경우도 보험업법 제115조와 동법 시행령 제59조를 개정하여 법령상 열거된 자회사 업종 제한을 유연화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를 통하여 보험회사의 신사업 진출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나. 자회사 소유시 신고요건 완화

보험회사가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자회사 소유시 신고요건을 완화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다.<sup>15)</sup>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이미 운영중인 유사한 예외 인정 법규를 준용하여,

15) 이러한 개정방안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고객의 편익이 제고될 것이다. 보험사·타 업종 간 합작 회사는 소비자에게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유연하게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발생한다. 둘째, 보험산업의 혁신이 야기될 것이다. 성장이 둔화된 시장에서 새로운 동력이 확보될 것이다. 셋째, 공정경쟁의 환경이 마련될 것이다. 대형

규정을 신설함에 있어서 현재의 지분 15%에서 30%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본다. 관련 규정으로는 감독규정 제5-13조의 4(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에 대한 특례)를 들 수 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5-13조의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대한 특례)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이 조에서 "회사등"이라 한다)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무한책임사원이거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회사등(무한책임사원 및 투자대상이 동일한 회사등은 하나의 회사등으로 본다)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회사등을 법 제115조제1항에서 정하는 자회사로 본다. [본조신설 2014. 1. 2.] <개정 2014. 12. 31.>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9조제4항의 내용을 규약에 반영하고 준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4. 12. 31.>
2. 「여성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9조제4항의 내용을 규약에 반영하고 준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4. 12. 31.>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9조제4항의 내용을 규약에 반영하고 준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4. 12. 31.>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투자집합기구 <신설 2014. 12. 31., 2016. 12. 29.>

다. 보험업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신설

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 16호를 신설하여 ‘보험업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비금융서비스 관련 플랫폼 등)’이라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보험회사는 혁신적인 고객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타산업과 차별화된 플랫폼 기반의 생활서비스 제공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해당 서비스의 영위 가능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보험회사가 자회사 및 부수업무 형태로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플랫폼을 통해 영위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sup>16)</sup>

<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

현 행	개정(안)
제59조(자회사의 소유) ③ 법 제1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59조(자회사의 소유) ③ 법 제1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플랫폼사와 보험사의 규제차익 해소되어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16) 2022년 6월 27일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도 경영이나 보험업무와 관련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관리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을 결정한 바 있다.

1. 보험회사의 사옥관리업무 (생략) ... 15. 외국에서 하는 보험업, 보험수리업무, 손해사정 업무, 보험대리업무, 보험에 관한 금융리서치 업무,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집합투자업 및 부동산업 <신 설>	1. 보험회사의 사옥관리업무 (생략) ... 15. 외국에서 하는 보험업, 보험수리업무, 손해사정 업무, 보험대리업무, 보험에 관한 금융리서치 업무,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집합투자업 및 부동산업 16. 보험업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비 금융 서비스 관련 플랫폼 등)
---	--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가 플랫폼 기업과 동등한 경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플랫폼 기반 선불전자지급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sup>17)</sup>과 함께 향후 전자금융거래법 처리시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의 마이페이먼트업이나 종합지급결제업을 포함하는 전자지급서비스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sup>18)</sup>

라. 헬스케어 스타트업 등 자회사 투자시 업무절차 간소화 방안

보험회사는 헬스케어 자회사 소유 등 신사업 추진을 위한 스타트업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2021년 6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자회사 소유가 허용된 바 있다. 하지만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자회사 신고시 이사회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 스타트업 등에 대한 소액 투자에도 불필요한 절차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보험회사가 전략적 제휴를 위해 소규모로 헬스케어 스타트업 등의 자회사에 투자를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면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자회사 소유 승인신청(신고)내용 [첨부서류] 보험회사의 자회사 서유 관련 이사회 의사록 사본	자회사 소유 승인신청(신고)내용 [첨부서류] 보험회사의 자회사 서유 관련 이사회 의사록 사본 (다만, 총 취득 예정금액이 보험회사 연결자기자본 금액의 1% 미만인 경우에는 투자이사결정 관련 서류(투자심사보고서 사본 등)으로 대체 가능

마. 특별이익 규정의 완화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걷기, 운전 등 습관 관리 디지털 서비스 포인트의 합계가 특별이익제공 금지 규정의 한도인 3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소비자의 참여

17) 보험사는 소비자 건강관리 노력성과에 따라 자체 포인트를 지급하고, 소비자는 건강용품 구매, 보험료 납부 등에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8) 전자금융거래법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안 참조

수준에 따라 각 디지털서비스의 포인트 지급 합계가 현 특별이익한도(연 보험료 10%, 3만원 중 적은 금액) 초과발생이 가능하게 된다.

보험회사 기보유고객이 건강·안전 관련 서비스참여시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를 개정하여, 지급하는 디지털 포인트는 특별이익 제공의 예외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등 기존 가입 고객이 안전운전, 걷기 등으로 획득할 수 있는 포인트 한도를 폐지할 경우, 실질적인 보험료 인하로 소비자 편익이 증대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 바. 개인용 건강관리기기 서비스 제공 가능 확대 방안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상 건강증진 건강증진형 상품가입자에 한해 이미 허용중으로, 건강관리기기 최대가액 30만원 제공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용 의료기기를 활용한 측정은 심전도, 혈압, 혈당 등에만 적용되고 있으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그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소변검사, 혈액성분수치검사' 등을 추가하여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 2. 보험사 1사 2라이선스 정책의 전향적 허용

보험사는 자회사 및 스타트업 제휴 등을 통해 인터넷, 플랫폼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보험상품(동물, 낱씨, 도난 등) 판매를 추진중이다. 하지만 1사 2라이선스 제도가 허용되지 않아 채널, 상품 다양화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채널, 상품을 중복하여 허용하지 않는 금융 정책으로 인해 「모회사-자회사」 간 영업채널/보험종목 중복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제한이 해소되더라도 모회사에서 영위하고 있는 영업채널, 보험종목 취급이 불가하여 결국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현행 규제는 보험회사의 다양한 온라인 상품개발에 지장을 초래하여 혁신을 저해하고 소비자 불편을 야기한다. 예를 들면 한화손보의 자회사 캐롯손보는 운행거리에 연동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는 혁신적인 자동차보험상품을 개발하여 온라인 판매중이다. 하지만 1사 1라이선스 정책으로 인해, 모회사 한화손보가 온라인으로 일반적인 자동차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 다른 문제로서 지분투자한 자회사가 동물보험 판매시, 1사 1라이선스 정책으로 말미암아 모회사 보험회사는 동물보험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보험회사가 지분 투자를 통해 플랫폼 스타트업을 자회사로 소유하게 될지라도, 모회사인 보험회사는 종목이 중복되는 자회사 상품 판매가 불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정책은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모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경우는 규제유지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일부 지분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모회사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 할 것이며,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판매채널 규제는 시장환경에 따른 유연한 대처를 위해 최근 인터넷/모바일/플랫폼 등 '빠른 시장변화 속도'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체계 정립이 필요하다. 기존CM 채널과 새로운 플랫폼 채널 특성을 감안하여 다른 채널로 규정하는 중복 이슈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향에서 다음 두 가지가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모회사-자회사 간 동일한 상품을 유사한 채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1사 2라이선스 정책을 신속하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본 15% 이상이라도 ”새로운 서비스 제공“ 또는 ”사업영위에 협업이 필요한 경우“라면 채널과 상품 중복을 허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3.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의 활성화

보험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 보험회사의 진입이 확대되어야 하며, 이러한 취지로 마련된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제도가 소비자, 기존 보험회사, 신규 사업자 모두에게 이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국내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제도는 자본금 요건이 완화되었지만 여타 요건이 종합보험회사와 동일하여 진입 이후 운영 부담이 높은 상태이므로, 소액단기보험회사의 진입과 성장이 어려운 상태이다. 국내 소액단기보험회사는 종합보험회사와 마찬가지로 인적 및 물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업무개시 후 3년간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준법감시인, 선임계리사,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무수탁자, 전산전문인력 및 영업·계약·보전·보험금 지급 등 보험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 하고 적정한 전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연간 보험료 규모와 보험종목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시가기준 지급여력제도(K-ICS)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단기보험이지만 시가방식의 부채평가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평가를 위한 전문인력 채용 등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소액단기보험회사의 진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진입 요건뿐만 아니라, 진입 이후 운영 부담과 국내 환경을 고려하여 지급여력제도, 계약자보호제도 등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지급여력의 경우, 연간 보험료 규모와 보험종목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보험회사와 동일하게 시가기준 지급여력제도(K-ICS)를 적용해야 하므로 시스템 구축 및 관리 비용이 큰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보험기간이 1년 이하임을 고려하여 K-ICS의 리스크 측정 대상에서 금리리스크를 제외하고 보험리스크 및 운영리스크만 측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또는 유럽 Solvency II 방식의 비례성 원칙을 적용하여 K-ICS 적용을 면제하고 RBC<sup>19)</sup>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다. 계약자보호제도로써 예금자보험기구 가입 대신 보증금 공탁 등의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인적 요건으로는 상품구조가 단순하고 만기가 짧은 상품을 취급하는 것을 감안하여 일부 인적 요건 완화를 고려할 수 있다. 자본금의 경우, 시행령에 제시된 20억 원의 최저자본금 요건을 10억 원으로 낮추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보험업법에서는 소액단기보험회사의 자본금을 10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운용자산의 안정성을 높이고, 경영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소액단기보험

19)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요청했을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 비율이다.



회사의 부실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자산은 예금, 국채, 지방채 등 유동성이 높고 안전한 자산으로만 운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sup>20)</sup>

## V. 결론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업무범위로 확장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의 비금융영역에서 금융분야로 확대하고 있는 반면에 보험회사는 자체 플랫폼을 통하여 다양한 비금융서비스를 검토중에 있다. 대표적인 분야로는 웨어러블 기기 활용, 운동처방 등을 연계한 헬스케어 영역, 차량공유나 택시 또는 대리운전이나 공유자전거 등과 보험이 연계되는 모빌리티 영역, 동물보험 전문 온라인 보험사 설립과 보험과 연계한 동물 병원예약 서비스 제공 등의 반려동물 영역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법령은 자회사 규제, 부수겸영업 무 규제, 1사 1라이선스 정책 등으로 서비스 운영 가능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동일한 기능, 동일한 규제' 원칙을 강조하면서 대형 플랫폼 기업과 금융회사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엄격한 최소 자본 요건과 유동성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대형 플랫폼 기업이 금융업을 영위하고자 한다면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측면과 함께, 보험회사의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사업 추진에 장애가 되는 자회사, 겸영업무 제한, 투자제한 등의 규제를 전향적으로 유연화하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판매채널은 시장환경에 따른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 사항이다. 채널과 상품을 중복하여 허용하지 않는 정책은 인터넷이나 플랫폼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동물보험, 낚시보험, 도난보험 등의 상품 판매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인으로 등장할 수 있다. 1사 1라이선스 정책 완화와 최근 도입한 소액단기보험회사의 비활성화 원인을 분석하여, 소액단기 상품개발과 함께 신채널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20) 미국의 알리안츠는 주택화재보험 전문 인슈어테크사인 Lemonade를 대상으로 300만 달러 규모 투자를 참여하고 있고, 독일의 Munich Re는 중소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인슈어테크사인 Next Insurance에 250만 달러 규모 투자를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 보험사는 인슈어테크사에 대한 투자 및 제휴로 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키고 있는 모습이다.



[기획세션\_주제 3]

# 기후변화와 보험규제정책

남 상 욱 교수 (서원대학교)









# 기후변화와 보험규제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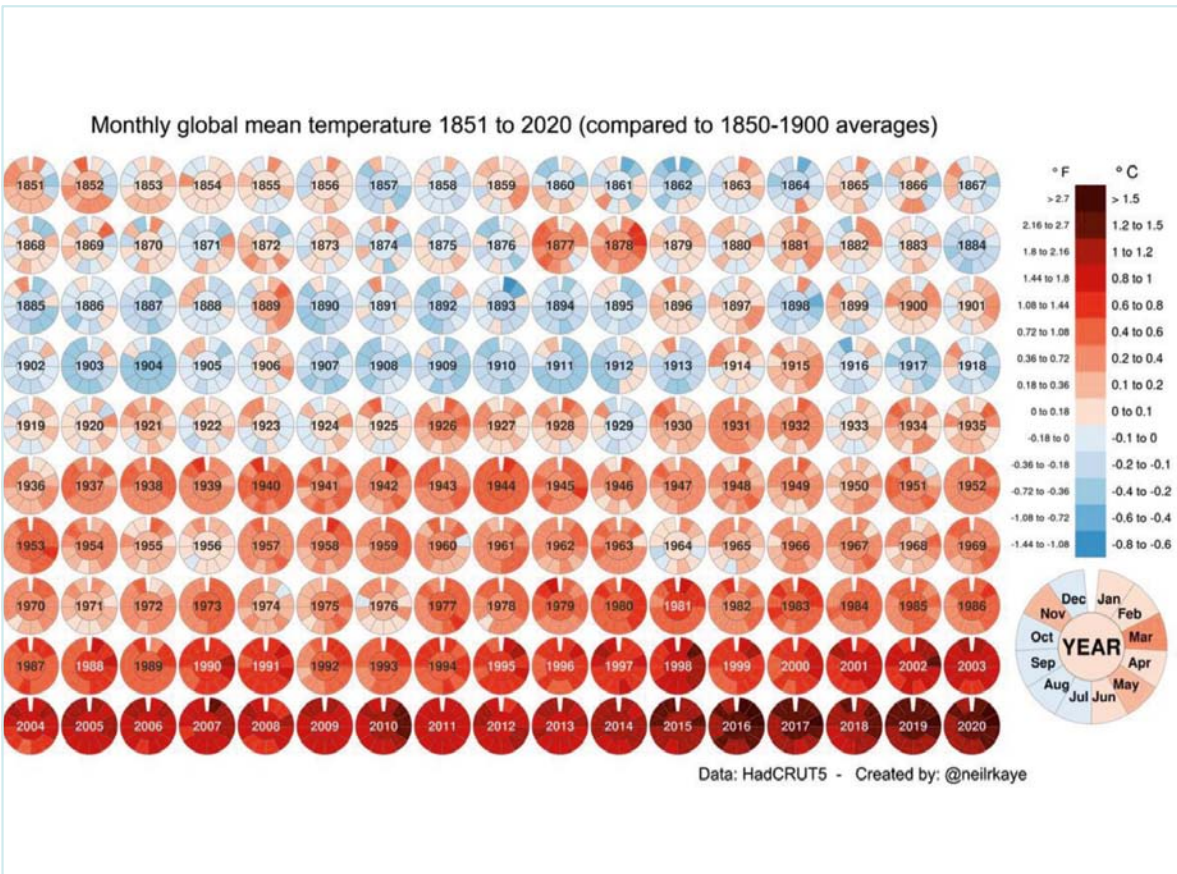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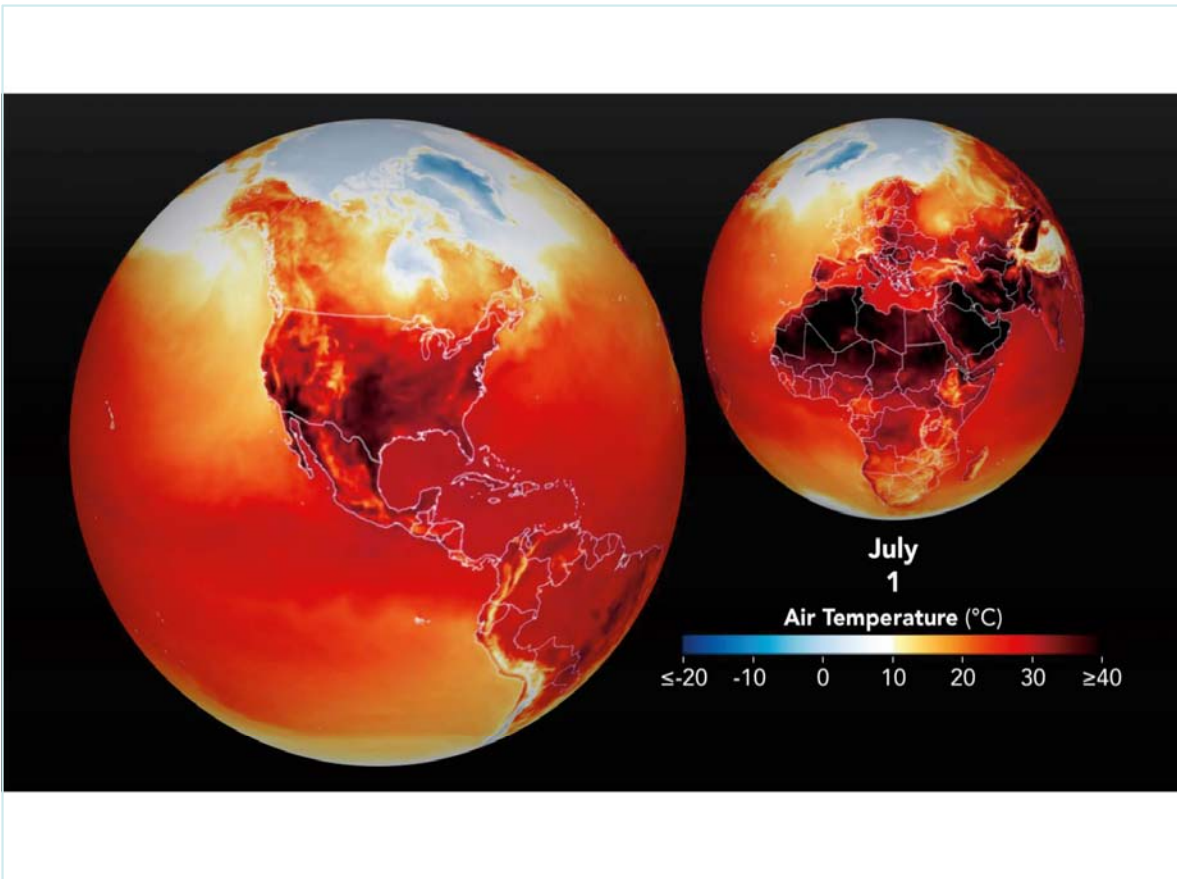
-기후관련 정보 공시를 중심으로-

2022.8.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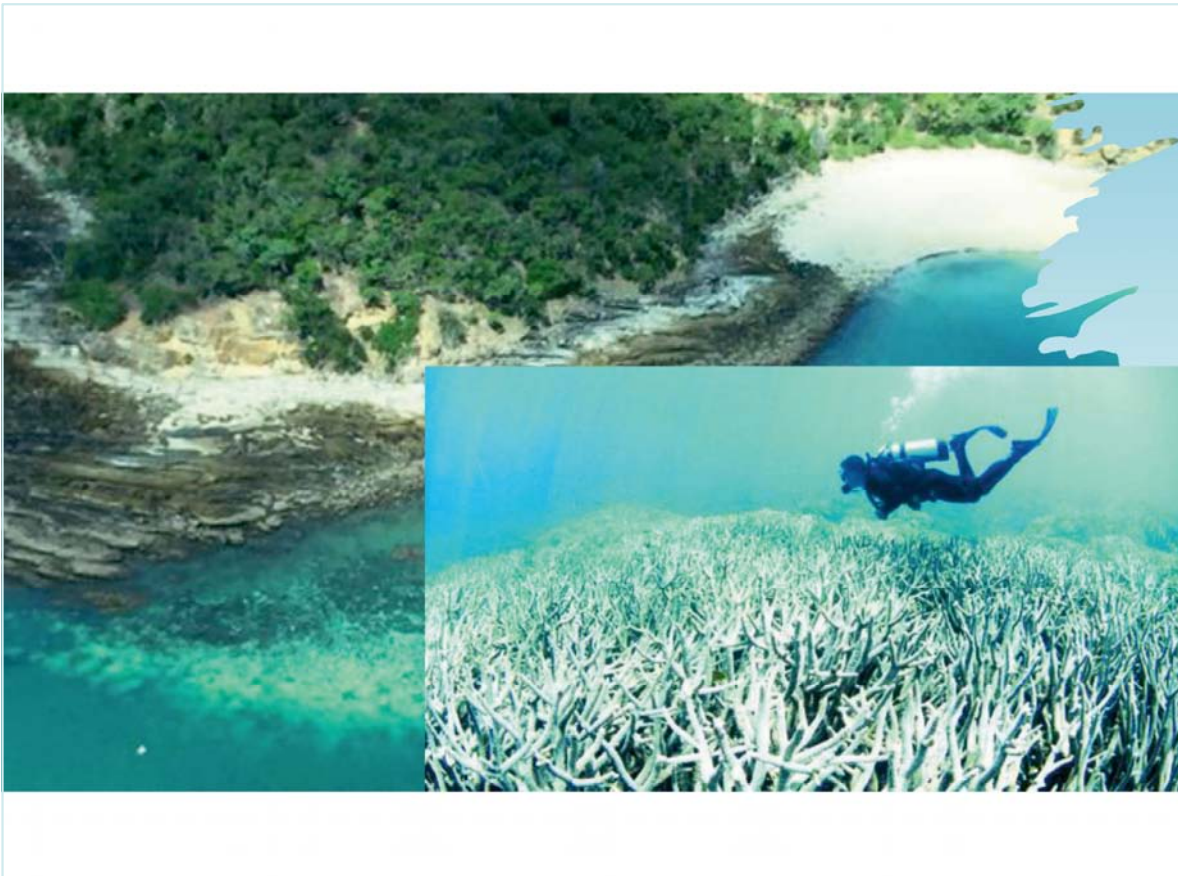
남상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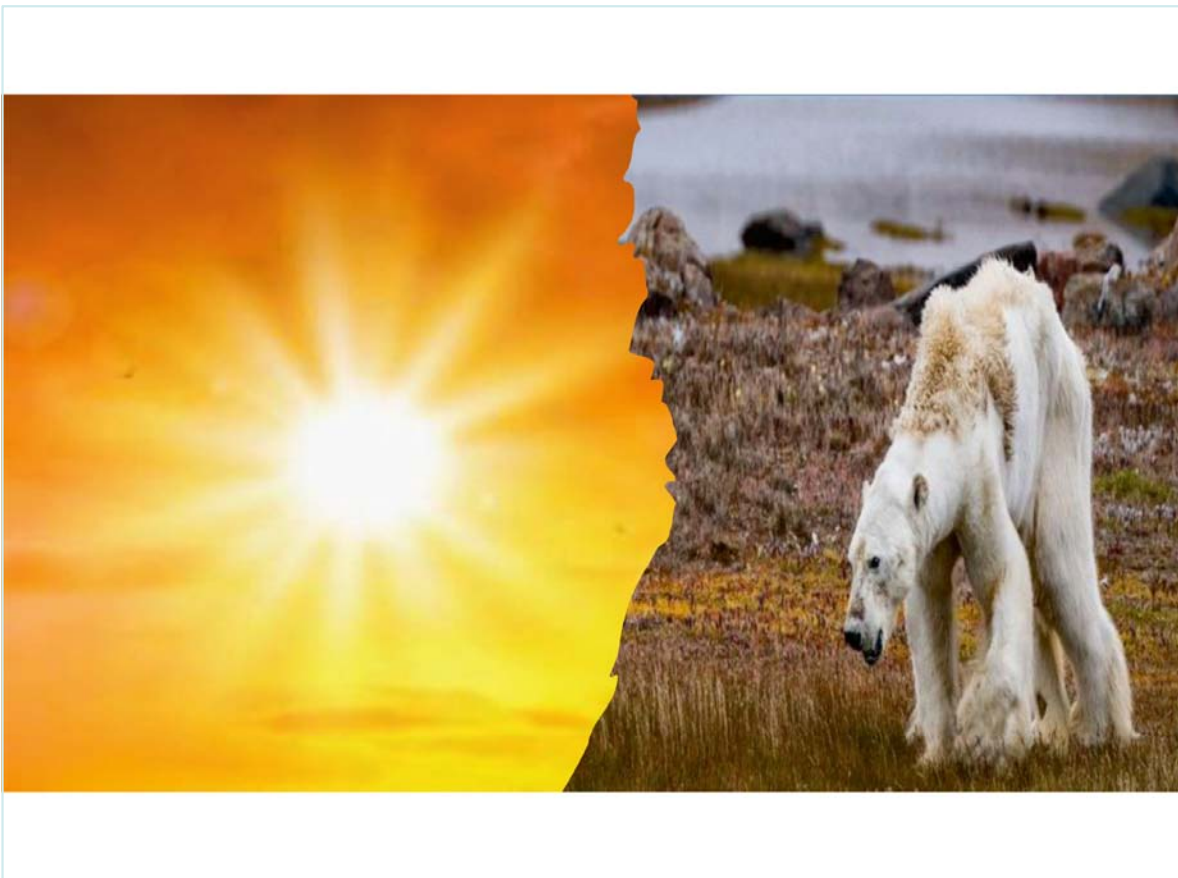
(서원대 경영학부 / 한국리스크관리학회-코리아리 기후리스크관리TF 위원장)

## I. 기후변화·기후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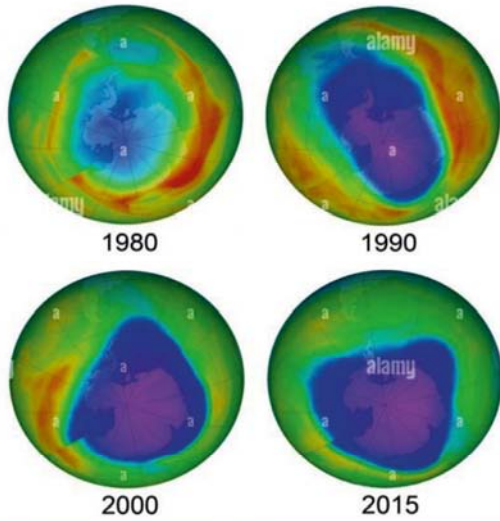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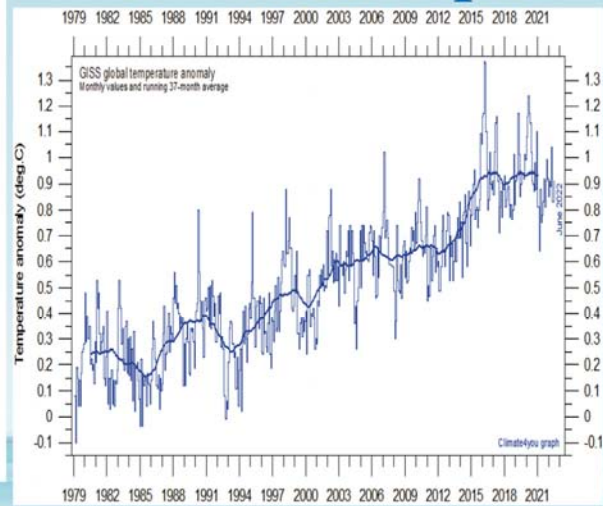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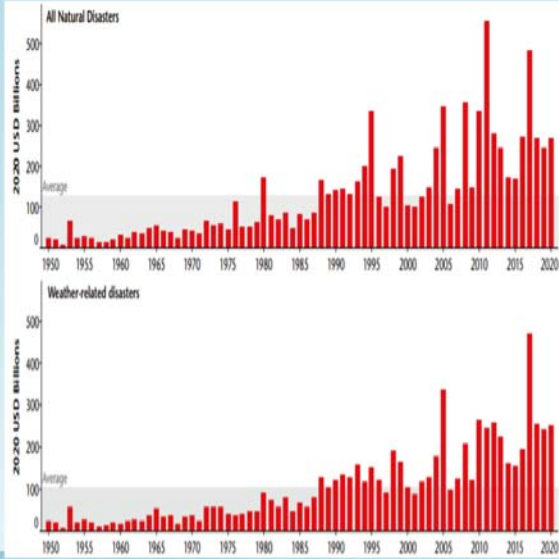
## Global warming → Global heating → →



## Climate collapse



### 기후관련재해로 인한 경제손실액과 보험손실액 추이



(단위 : USD bil.)

연도	손실액	Swiss Re	Munich Re	Aon
2017	경제손실액	3,340	3,400	4,620
	보험손실액	1,440	1,380	1,560
2018	경제손실액	1,650	1,600	2,520
	보험손실액	800	800	980
2019	경제손실액	1,460	1,500	2,290
	보험손실액	600	520	710

출처 : Aon, Weather, Climate & Catastrophe Insight-2020 Annual Report



기후변화로 보험업에 미칠 영향은  
 매우 심대

➤ 최악의 시나리오 : 보험손실 거대화를 넘어 기후변화 리스크 극대화로 보험공급 자체가 불가능 → 보험시장 붕괴

이상 기후,  
기후 리스크  
축적

부보불능물건  
확장

요율 산정  
불가

보험공급 축소,  
고위험물건  
인수 불가

부보불능물건  
범위 확장

## Ⅱ. 기후리스크와 보험규제정책







➤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 보험규제정책 선제적 강화 양상**

- ✓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대응 규제 정책 틀 정비
- ✓ 기후변화로 인한 보험사 지급불능사태 발생 대비 자기자본 규제 강화
- ✓ 보험회사의 재무 리스크와 그 대응책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화
- ✓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보험사 영양에 대한 정량/정성적 분석 요구
- ✓ 기후 관련 Stress Test 추가 실시



*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 Authority*

기후변화로 기후 관련  
손해 증가와 이로  
인한 보험료율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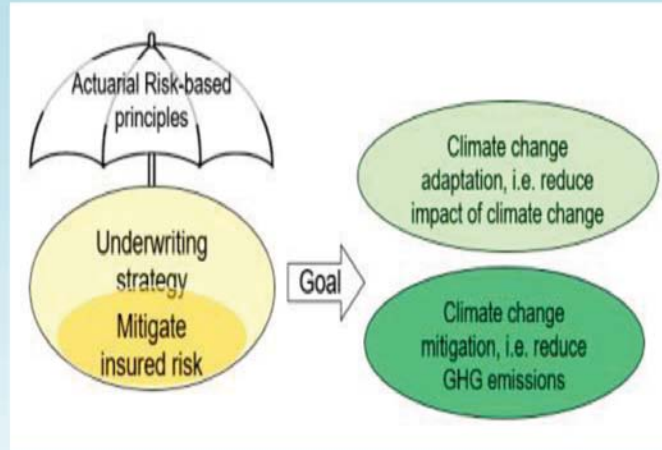
공평하지 않은 보험  
공급과 일정 리스크에  
대한 보험 인수 거절  
또는 외피 사태 발생

보험을 통한 손해  
보전액과 경제 손실액  
간 차이 Protection  
gap 확대 우려



## Impact Underwriting

- 보험회사가 기후변화에 적응 또는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언더라이팅 전략



출처 : EIOPA, REPORT on non-life underwriting and pricing in light of climate change, 2021.7.

### ➤ Impact Underwriting :

- i) 보험회사가 **기후 관련 데이터와 리스크 관리 및 리스크 평가 역량을 동원**
- ii) 리스크에 기반한 보험료를 책정 그리고 계약조건 적용으로 **보험가입자가 스스로 리스크를 줄이려는 동기를 부여에 기후 적응 또는 완화에 기여하도록 유인**
- iii) **보험회사 스스로도 기후변화에 적응, 완화에 일조할 수 있는 언더라이팅**

➤ TCFD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 태스크포스)



- G20 요구로 FSB(Financial Stability Board)가 주도, 2015년 12월 창설
  - ✓ 민간 주도 TF로, 세계 각국 대형 은행, 보험회사, 자산관리회사, 연기금, 비금융기업, 외계법인, 신용평가기관 책임 31인으로 구성
  
- 2017년 6월 기업 대상 기후 리스크 및 기외에 관한 정보공시 관련 최종보고서 발표
  - ✓ 기후관련 리스크와 기외를 평가에 경영 전략과 재무 측면에 대한 영향 공시 권고
  - ✓ 기후변화 영향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는 업계에 대한 추가 가이드라인 제시

Box ES1  
TCFD 2021 Year in Review

Continued Growth in Support



**2,600+**  
TCFD Supporters Globally

**8**  
TCFD-Aligned Official Reporting Requirements

- ① Brazil
- ② European Union
- ③ Hong Kong
- ④ Japan
- ⑤ New Zealand
- ⑥ Singapore
- ⑦ Switzerland
- ⑧ United Kingdom



출처 :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2021 Status Report, 202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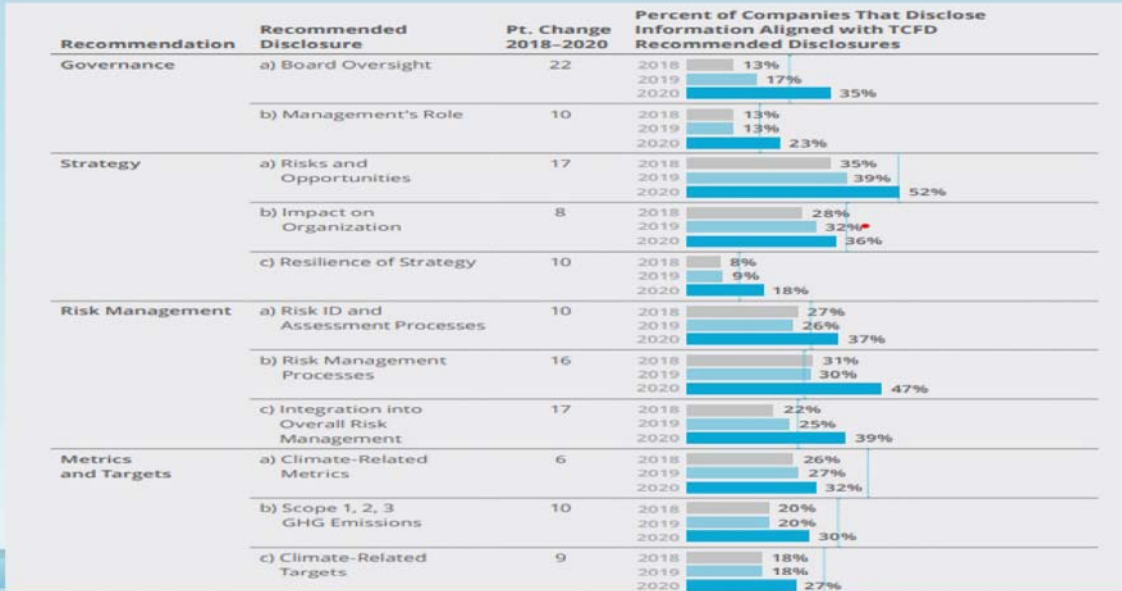
➤ TCFD 기후 관련 정보공시 주요 사항

항목	내용	정보 공시 사항
거버넌스	기후 관련 리스크와 기회에 관한 기업의 거버넌스 (어떤 체계로 기후 관련 리스크와 기회를 검토에 경영에 반영하고 있는가)	① 기후 관련 리스크와 기회에 대한 이사회의 감시 체계 ② 기후 관련 리스크와 기회를 평가하고 관리함에 있어 경영자의 역할
전략	기업의 사업 전략·재무 계획에 대한 기후관련 리스크와 기회의 잠재적 영향 (단기, 중기, 장기에 걸쳐 기업 경영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③ 단기, 중기, 장기 기후 관련 리스크와 기회 ④ 기후 관련 리스크와 기회가 사업 전략·재무 계획에 미치는 영향 ⑤ 다양한 기후 관련 시나리오를 고려한 기업 전략 탄력성

	내용	정보 공시 사항
리스크 관리	기후 관련 리스크나 기회를 특정·평가·관리하는 프로세스 (기후 관련 리스크나 기회를 어떻게 특정하고, 평가하고, 경감하고 있는가)	⑥ 기후 관련 리스크나 기회 특정, 평가 프로세스 ⑦ 기후 관련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⑧ 기후 관련 리스크 특정, 평가, 관리하는 프로세스의 전사 통합 리스크 상황
지표·목표	기후 관련 리스크나 기회를 평가,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표와 목표 (기후 관련 리스크나 기회 평가에 대해 어떤 지표를 이용에 판단하고, 목표 대비 진척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⑨ 기업 전략이나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에 맞춘 기후 관련 리스크나 기회 평가 지표 ⑩ 온실가스 배출량과 관련 리스크 ⑪ 기후 관련 리스크나 기회 관리 목표, 실적

출처 : TCFD, Final Report: Recommendations of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2017.6.

### 보험업계 기후 관련 정보공시 항목별 비중



출처 :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2021 Status Report, 2021.10.

### ➤ 시나리오 분석 공시 의무화

- 지구 온도 2°C 상승을 감안한 저탄소 경계로의 이행 과정, 물리적 리스크가 높아지는 시나리오별 공시

- ✓ 탄소배출량 정량화
- ✓ 탄소중립 이행 과정

### ➤ 시나리오 분석 실시

정성적  
시나리오  
분석

정량적  
시나리오  
분석

- ✓ 이행 리스크나 물리적 리스크가 큰 기업은 더욱 엄격한 시나리오 분석 요구



### TCFD의 시나리오 분석 주요 내용

시나리오 분석 목적 및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이 사업전략이나 실적에 대한 <b>기후변화의 잠재적 영향을 이해</b>하고, 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을 <b>사업 계획 수립 프로세스에 적절히 반영</b>하기 위해 다양한 조건 아래서 기후 관련 리스크와 기외의 잠재적 변화를 고려할 필요</li> <li>시나리오는 특정 양상이 계속될 경우나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검토하기 위한 수단</li> </ul>
시나리오 분석 접근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나리오 분석은 <b>경쟁적 분석과 정량적 분석</b> 두 가지로 실시</li> <li>대개 경쟁적 분석이지만, 이행 리스크나 물리적 리스크는 더 엄밀한 경쟁적 시나리오 분석과 함께 <b>기업 실적에 미칠 악영양 요인 · 추세에 대한 정량적 분석</b> 실시</li> <li>기업 전체 및 구체적으로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 또는 시장 수준에서의 분석 필요</li> </ul>
시나리오 분석 결과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행 리스크나 물리적 리스크에 대해 어느 정도 취약한지, 어떻게 대처에 나갈지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중요</li> <li>특히 <b>기후 리스크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기업은 분석 시나리오의 전제 조건 등을 공개</b>에 투자자가 시나리오 분석 결과와 그 안계를 이해하도록 할 필요</li> </ul>

출처 : TCFD, Final Report: Recommendations of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2017.6.

### 온실효과가스 배출량 공시 : 2021.10. TCFD 탈탄소를 위한 행동계획에 관한 새로운 공시 지침

공급망 배출량 =  
[Scope1 배출량] + [Scope2 배출량] + [Scope3 배출량]

❖ Scope1 : **자사의 연료 사용에 따른 직접적인 대기 중 배출량 [직접 배출]**

❖ Scope2 : **다른 사람에게 공급받은 전기, 열 이용으로 발생한 전기, 열 생성 단계에서의 배출량 [간접 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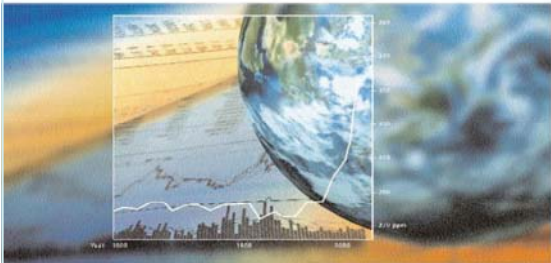
❖ Scope3 : **자사 활동과 관련된 타사의 배출 [Scope2 이외의 간접 배출]**



### <참고> 온실요과가스 배출량에 관한 국제 기준

- **Greenhouse Gas Protocol Initiative (GHG) :**
  - ✓ 1990년대 후반 온실가스 외계와 보고에 대한 국제기준 정립 필요성 대두
  - ✓ 세계자원연구소(World Resource Institution: WRI),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경제인회의(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BCSD) 주도로, 각국 정부, 기업, NGO 등이 참여에 출범
  - ✓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보고 기준 개발 및 이용 촉진 도모
- **안 기업에서 배출된 온실가스가 아닌 공급망 전체의 배출량을 중요시**
  - ✓ 공급망(supply chain)-원자재나 부품의 조달, 생산, 물류, 판매, 폐기의 일련의 흐름
- **공급망 배출량**
  - ✓ 자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직접 배출)뿐 아니라 다른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간접 배출) 포함

The Greenhouse Gas Protocol



A Corporate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  
REVISED EDITION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WORLD RESOURCE INSTITUTE





➤ 2009년 3월 기후변화에 따른 보험사의 재무 리스크와 그 대응책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화

- 보험사의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정보공개와 리스크 평가 프로세스를 감독 당국이 살피겠다는 포석
- 무엇보다 기후변화에 따른 보험사의 지급능력과 보험계약자의 보험구입능력 (affordability)을 파악에 기후변화가 보험업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미리 파악하려는 목적

➤ 2010년 이래 기후 리스크 공시 조사 시행

- 조사 대상 주 : 캘리포니아주, 워싱턴주, 뉴욕 주, 미네소타 주, 코네티컷 주, 뉴멕시코 주
- 조사방식 : 조사 대상 보험사가 캘리포니아 주보험청(California Department of Insurance)이 개발한 온라인 시스템 내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전략 등에 관한 8가지 질문에 응답
  - ✓ 8개의 질문 중 TCFD 정보공시 요구 내용 중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기업 전략 복원력에 관한 질문은 미설정
- 각 보험사의 답변은 캘리포니아 주 보험청 웹사이트에 업로드, 감독당국, 보험사 및 일반인이 보험사의 기후변화 대응, 취약성, Best Practice 등 특정 가능



- 다만, 미국 내 기후변화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로, 기후변화 대응에 소극적인 주의 보험감독당국도 많아, 실제 조사에 참여한 곳은 6개 주에 불과한 현실

✓ 2019년부터 일부 보험사의 경우 TCFD의 기후 관련 정보공시를 수용해 공시 중

**기후 리스크 공시 조사 8가지 질문 내역**

	양목	질문 내용
1	Emissions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 감축, 완화할 계획이 있는가? (Yes이면 내용을 적고, No이면 그 이유를 쓰시오.)
2	Risk Plan	리스크 관리나 투자 관리에 있어 기후변화에 관한 방침이 있는가? (Yes이면 내용을, No이면 기후변화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또는 기후변화를 다루지 않는 이유를 쓰시오.)
3	Assess	기후 관련 리스크를 특정에 사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도를 평가하는 프로세스가 있는가. (Yes의 경우 내용을 적고, No이면 그 이유를 쓰시오.)

	양목	질문 내용
4	Risks	기후변화가 사업에 미치는 연개, 장래의 리스크를 특정하고 있는가? (Yes이면 그러한 리스크가 어떻게 사업에 영향을 주는지, 지리적 영역의 특성을 포함해 설명하시오. No의 경우 이유를 쓰시오.)
5	Invest	기후변화가 투자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있는가? 또 그 관점에서 투자전략을 변경하였는가? (Yes이면 그 내용과 대체사항을 적고, No의 경우는 그 이유를 쓰시오.)
6	Mitigate	보험계약자에게 기후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손실의 경감 대응을 독려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가? (Yes이면 그 내용을 적고, No의 경우는 그 이유를 쓰시오.)
7	Engage	보험계약자에게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가? (Yes이면 그 내용을 적고, No의 경우는 그 이유를 쓰시오.)
8	Manage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를 관리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가? (Yes의 경우, 보험조건이나 모델의 활용 등 실시하고 있는 대응책을 적고, No의 경우는 그 이유를 쓰시오.)

출처 : NAIC, Assessment of and Insights from NAIC Climate Risk Disclosure Data, 2020. 11.





**AVIVA** /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Contents**

**Summary**

- 02 Foreword
- 03 Our Climate Story
- 07 Our 2021 Climate Highlights and Looking Ahead
- 12 TCFD Index

**Governance**

- 14 Governance
- 19 Climate Training

**Strategy**

- 21 Strategy
- 23 Our Climate Scenario Analysis
- 26 Our Strategic Focus

**Risk Management**

- 53 Risk Management

**Metrics and Targets**

- 56 Metrics and Targets

**Independent Assurance**

- 65 Independent Assurance

**Appendix**

- 69 Climate Scenario Analysis
- 77 Assets Under Management (AUM): Context

- Aviva a Heatmap Algorithm(AHA)을 통한 기후 대응 Score를 자체 산출에 투자 결정 판단에 활용

- ✓ AHA Score : Carbon Delta\* 제공 ESG rating 등급, CFP\*\* 등 여러 정보와 탄소배출량, 탄소 및 물 관리 지표 등을 토대로 산출

- \* 2015년 설립, 기업 기후변화 resilience를 특정, 분석에 특화된 환경 핀테크사, 2019년 미국 금융서비스기업인 MSCI에 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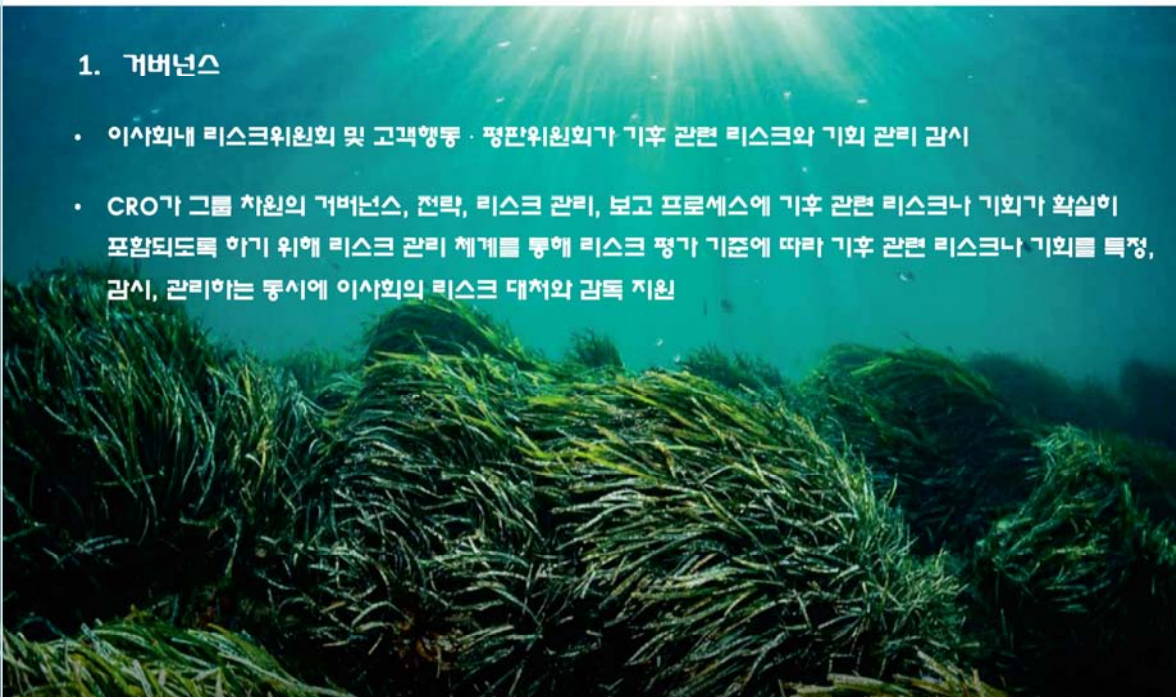
- \*\* Carbon Footprint of Products : 상품, 서비스의 원재료 조달에서 폐기·재활용에 이르기까지 배출되는 총 온실효과가스 배출량을 CO<sub>2</sub>로 환산해 표기

- Climate VaR를 활용에 기후 리스크와 사외 기외에 따른 잠재적 영향 평가

- ✓ 거시 경제지표, IPCC 기후변화 시나리오 등을 고려에 3~5년 단기부터 15년까지의 장기 기후 관련 리스크와 사외 기외 및 잠재적 영향 평가

## 1. 거버넌스

- 이사회내 리스크위원회 및 고객행동·평판위원회가 기후 관련 리스크와 기회 관리 감시
- CRO가 그룹 차원의 거버넌스, 전략, 리스크 관리, 보고 프로세스에 기후 관련 리스크나 기회가 확실히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 체계를 통해 리스크 평가 기준에 따라 기후 관련 리스크나 기회를 특정, 감시, 관리하는 동시에 이사회내의 리스크 대처와 감독 지원



## 2. 전략

- 투자, 보험, 사업, 영향력 등 4가지 범주의 전략 수립,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 목표로 설정**
- **주주로서의 영향력 활용**, 투자 기업 대상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독려
  - ✓ 투자 기업의 대응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투자 철수 검토
- 기후 리스크에 노출된 고객의 회복력(resilience)과 보험 보상 및 기후, 지구 환경을 고려한 보험 **혁신적 보험상품 개발**
  - ✓ 전기자동차용 보험상품, 재생에너지용 보험상품, 대중교통 이용 고객 보험료 할인, 공유 경제 지원 등



## 3. 리스크 관리 및 목표

- 기후 리스크나 기회가 사업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관리 감시하기 위해 개발한 Climate VaR를 활용, **IPCC 시나리오별로 영향 평가**
  - ✓ CFP를 이용해 투자에 대한 정기 체크
- 투자 포트폴리오의 Warming Potential\*을 측정, **파리 협정 목표와의 정합성 평가**
  - \* 투자 대상이 받게 될 기후변화 영향력을 온도로 표시
- 손해보험의 기후 관련 리스크는 매년 보험료 책정 및 재보험 활용을 통해 비교적 한정적이나, **장기적으로는 인수 불가능 또는 저율의 보험료로 보험인수가 불가능한 상황 상정**





#### 4. 시나리오 분석 및 전략 복원력

- IPCC의 4가지 시나리오별로 영향 분석

**IPCC RCP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Scenario:**  
 RCP 2.6(기온 상승 0.3~1.7°C), RCP 4.5(기온 상승 1.1~2.6°C),  
 RCP 6.0(기온 상승 0.3~1.7°C), RCP 8.5(기온 상승 2.6~4.8°C)

- ✓ 1.5°C, 2°C 시나리오 : 물리적 리스크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탄소집약형 부문 투자에는 부정적 영향
- ✓ 1.5°C 시나리오 : 기후변화 완화 기술 발전으로 창출될 수 있는 기회를 고려하더라도 이행 리스크가 물리적 리스크보다 클 가능성
- ✓ 2°C 시나리오 : 이행 리스크와 물리적 리스크는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룰 수 있으나, 3°C와 4°C 시나리오에서는 물리적 리스크가 더 클 가능성
- ✓ 물리적 리스크가 가장 커지는 4°C 시나리오에서는 주식, 회사채, 부동산 등의 장기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AVIVA가 떠 안을 리스크는 최대

- 분기별 Stress Scenario Test(SST) 실시, ESG 및 기후 관련 리스크 모니터링

### AXA / Climate Report



- 1. AXA's key climate & biodiversity commitments put in context**
- 2. The science and the politics of climate change**
  - 2.1 A robust scientific consensus
  - 2.2 The Paris Agreement is the overarching framework and roadmap for climate action
  - 2.3 2021: the last Mile to Glasgow and Kunming
  - 2.4 Green recovery packages to create the right incentives
  - 2.5 The EU Sustainable Finance Strategy
- 3. Governance**
  - 3.1 "Role in Society" Steering Committee (RISSC)
  - 3.2 Investments
  - 3.3 Insurance underwriting
  - 3.4 Group Sustainability
  - 3.5 Audit Risk & Compliance Committee (ARCC)
- 4. Strategy, Metrics & Targets**
  - 4.1 Section overview
  - 4.2 Climate Strategy & Commitments
  - 4.3 AXA For Progress Index
  - 4.4 Net-Zero Coalition-building
  - 4.5 Climate scenarios
  - 4.6 Climate metrics overview
  - 4.7 Impact; Climate-related portfolio alignment
  - 4.8 Risk: Climate Value at Risk (C'VaR)
  - 4.9 Carbon footprinting - new approaches and targets
  - 4.10 Full dashboard
  - 4.11 Climate metrics: conclusion
  - 4.12 Exclusions: "stranded assets" risk mitigation
  - 4.13 Green Investments
  - 4.14 Transition Bonds
  - 4.15 Biodiversity
  - 4.16 Impact Investing
  - 4.17 Shareholder engagement & voting
  - 4.18 Beyond climate: ESG Integration Strategy into Internal Credit Ratings
- 5. Risk Management**
  - 5.1 Internal control and Risk Management
  - 5.2 Climate stress testing
  - 5.3 Climate-related Property (re)insurance impacts
  - 5.4 Climate-related physical risks impact on Real Estate investments
  - 5.5 Climate-related litigation risks
  - 5.6 Climate-related health insurance impacts
  - 5.7 Climate-related impacts on AXA's own operations
- 6. Other information**
  - 6.1 Green Business
  - 6.2 Climate & ESG training and customer communications
  - 6.3 Direct environmental footprint management
  - 6.4 Climate and sustainability-related memberships
  - 6.5 Academic Research
  - 6.6 Sustainability Ratings
  - 6.7 Statutory Auditor's report (PwC)
  - 6.8 Disclaimer

**AXA / Annual Report**

- 책임기업으로서 자사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적극 나서면서 기후변화에 대응
  - ✓ 2012년부터 에너지 소비, 차량 이동, 출장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환경관리 체계 도입
  - ✓ 2012년~2021년까지 보험과 투자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75% 감축

탄소배출량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Scope 1	38,778	37,889	26,292	23,362
Scope 2	69,160	62,765	40,894	31,997
Scope 3	64,948	90,584	17,460	53,492
합계	172,887	191,238	84,647	59,225
1인당 배출량	1.4t	1.58t	0.72t	0.52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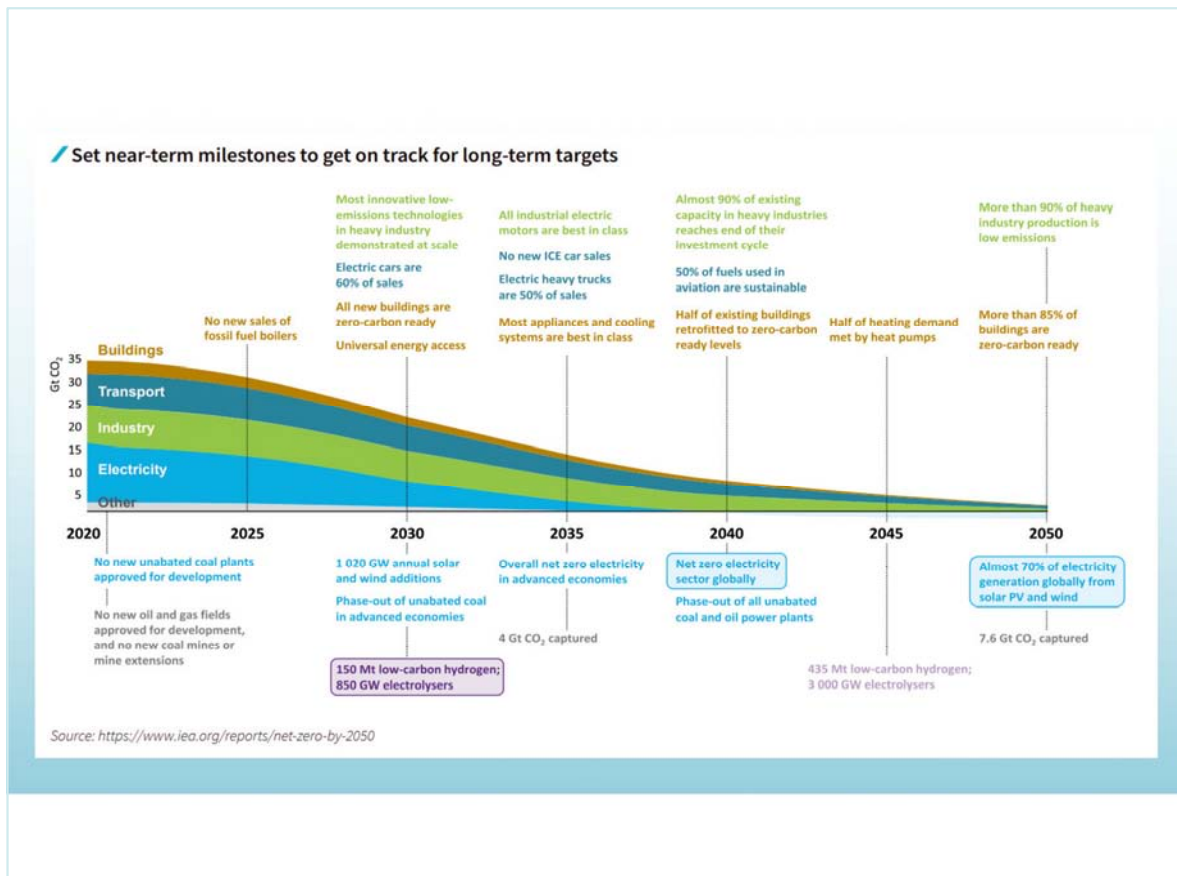
출처 : AXA, UNIVERSAL REGISTRATION DOCUMENT – ANNUAL REPORT 2021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물 소비량(m³) water	1,003,964	850,506	566,155	370,300
1인당 물 소비량(m³) water consumption per person	8.07	7.01	4.81	3.23
종이 사용량(t) paper	1.616	1,384	1,082	552
폐기물 재활용률(%) Recycled paper and/or guaranteeing sustainable management: office	58	58	48	64
총 에너지 소비량(MWh) total energy consumption	260,992	305,500	344,684	233,927
총 전력 소비량(MWh) Electricity consumption	204,838	203,335	193,113	168,312
재생가능전력 비중(%) Share of renewable electricity	55	59	57	64
비행기, 철도 등 출장 거리(백만 km) Business travel: train and airplane	337	393	88	28
자동차 출장 거리(백만 km) AXA' s car fleet	224	220	147	141
자동차 출퇴근거리(백만 km) Home/workplace commute (round trip)	920	977	684	775

출처 : AXA, UNIVERSAL REGISTRATION DOCUMENT – ANNUAL REPORT 2021

			2025년 목표 (2019년 대비)
1	온실요과가스 배출량 (에너지, 자동차 운영, 출장, IT 활동) Reduce AXA's CO <sub>2</sub> emissions (Energy, car fleet and business travel and IT activities)	Co <sub>2</sub> t	-20%
	에너지 소비에 따른 배출량 CO <sub>2</sub> emissions due to energy consumption		-35%
	자동차 운영에 따른 배출량 CO <sub>2</sub> emissions due to car fleet		-20%
	출장에 따른 배출량 CO <sub>2</sub> emissions due to business travel		-18%
2	총 에너지 소비량 Reduce energy consumption	KWh	-10%
3	재생가능전원 대비 RE 100 비중 (AXA 건물, 디지털센터) RE100 commitment to renewable electricity (AXA-buildings and data centers)	%	100%
4	1인당 미분류 폐기물 배출량 Reduce unsorted waste per FTE(Full time equivalent)	kg/FTE	-10%
5	1인당 물 소비량 Reduce water consumption per FTE	m <sup>3</sup> /FTE	-10%
6	1인당 종이 소비량 Reduce off ice and marketing paper consumption per FTE	kg/FTE	-20%

출처 : AXA, UNIVERSAL REGISTRATION DOCUMENT – ANNUAL REPORT 2021





## IV. 정리 및 우리의 방향



-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 곁에 안착 증으로, 앞으로 지구 고온화를 완화시키지 못하면 인류 전체가 절체절명의 상황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처지
  - 점점 뜨거워지는 열기 속에 세계 전역에서 각종 이상 재에 발생은 주지의 사실
  - 급속한 기후변화는 우리의 삶 뿐 아니라 생태계 전반에 치명적 위협을 가할 것임이 자명
- 기후변화 리스크는 그 어떤 리스크보다 강력하고, 예측이 불가한 초거대 리스크로, 가능한 빨리 그리고 될 수 있는 안 다 함께 나서 대응, 대처임이 절실
- 보험업도 지금 당장 기후위기에 맞설 수 있도록 임을 보태고, 기후변화에 응전할 태세를 갖추는 것이 시급

➤ 유럽을 중심으로 연계 급속이 진전되는 기후변화에 보험업이 견제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분투 중

- 개별 보험사의 자체 기후변화 대응전략 외에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 리스크 등에 대비한 보험사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 기후 관련 정보공시 의무와 등 보험규제정책 당국의 대응 움직임이 점점 빨라지고 강해지는 모습
- 기후변화로 인한 보험손실 거대화로 자칫 보험공급의 한계가 극대화되어 보험시장이 닫히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

➤ 과연 우리는 연계 어떤 상태인지 돌아 볼 필요

- 진정으로 기후변화가 보험업의 위기인지 인정하고는 있는지
- 기후위기에 대응할 대책 마련에는 나서고 있는지
- 아니면 그저 우리와는 상관없는 먼 얘기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 보험당국은 보험사의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 **분명한 것은, 기후위기가 우리 곁에 와 있다는 것이고, 또 앞으로 보험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 의식 공유가 필요**

  - 이미 K-ICS에 대해 리스크 요소가 RBC 리스크량 산정에 포함되어 추가 자본 적립을 요구하고, 또 앞으로 기후 리스크가 더 강력해지면 그간 축적해 온 경험요율 토대 등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음
  - 기후 리스크가 쌓여 나갈수록 거대 보험금 지급과 보험 손실 확대 외에도 보험사의 지급능력과 자금 유동성 확보 문제도 함께 켜져 나갈 수밖에 없을 기세
- **단기적으로는 기후 관련 정보공시 의무와 대상 확대와 정보공시 내용 심화 시 1차적으로 보험업계에 크나큰 부담이 될 것**

  - 지금부터 기후 관련 정보공시에 대비할 체비를 적극적으로 갖추는 것이 추후 경영 부담을 줄임과 아울러 기업 가치 제고와 시장과 소비자간의 신뢰를 쌓는 길

- **당국 또한 앞으로 보험업에 대한 기후 관련 정보공시 추진 시 몇 가지 사안을 참고할 필요**

  - 기후 관련 정보공시는 보험규제감독 차원과 투자자와 보험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 차원에서 요긴하지만, 정보공시를 위한 비용과 무엇보다 기후 관련 정보공시를 위한 데이터 및 분석 틀 구축이 선행될 수 있도록 당국의 정책적 지원 검토 필요
  - 기후 시나리오별 정보공시에서 적용할 IPCC의 RCP 시나리오가 기후변화 연구나 정책을 목적으로 안 것이기에 이를 적용해 시나리오별 보험사에 대한 잠재적 재무 영향을 평가하는 것은 곤란한 면이 있음을 삼작할 필요
  - 온실요과가스 배출량 산출 시 정책적으로 배출량 산출 지원 방안도 고려해 볼 가치

- 以上 -

### 참고문헌

- 남상욱·이동근, 보험, 기후변화를 묻다, 보문사, 2022.5.
- 남상욱,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와 보험업의 대응, 한국리스크관리학회 기후세미나 자료, 2021.12.
- 남상욱, 보험업의 기후변화 영향과 적응에 관한 연구, 기후변화학회지, 한국기후변화학회, 2017.6.
- 남상욱, 기후변화리스크와 보험업의 적응, 한국보험학회 보험포럼자료, 2017.3.
- Aon, Weather, Climate & Catastrophe Insight-2020 Annual Report.
- AVIVA,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2021 (TCFD).
- Axa, 2021 Climate report: the decisive decade, 2021.6.
- AXA, Universal Registration Document- Annual Report 2021.
- EIOPA, REPORT on Non-life Underwriting and Pricing in Light of Climate Change, 2021.7.
- GHG, A Corporate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 Revise 3.51.
- NAIC, Assessment of and Insights from NAIC Climate Risk Disclosure Data, 2020. 11.
- NASA Earth Observatory, A July of Extremes, 2022.7.
- TCFD, Final Report: Recommendations of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2017.6.
- TCF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2021 Status Report, 2021.10.
- Visual Capitalist, Visualized: Historical Trends in Global Monthly Surface Temperatures (1851-2020), 2021.1.
- 浦上 純, 温室効果ガス排出量の算定方法と欧米損害保険会社の削減に向けた取組, 損保総研, 2021.11.
- 望月 一弘, 気候関連財務情報の開示に関する国際的動向, 損保総研, 2021.1.



### <참조>

주요국의 기후 관련 재무  
정보 공시에 대한 법규제  
흐름



## EU

- 2014년 - 종업원 500인 이상,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기업(상장사, 은행, 보험회사 등)에 대해 환경, 사회, 부패방지 등 비재무정보를 연차보고서 등에 공시하도록 하는 비재무정보 공시지침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이하 NFRD) 개정
  - ✓ 이를 토대로 각 EU 국가에서 법제화에 기업별 비재무정보 공시 추진
- 2017년, EU 비재무정보 가이드라인 마련, 비재무정보 공시에 관한 기본방침, 공시내용, 공시사례 등 제시
- 2019년, 유럽위원회는 기후관련재무정보 공시에 관한 요구 상승, TCFD 제안 내용을 기초로 한 기후관련재무정보 공시 가이드라인 공표

- 기후 관련 재무정보의 공개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지침이 아니며, EU 회원국은 이 가이드라인을 자국법에 법제화할 필요가 없으므로 강제력이 없다는 것에 대응, NFRD 개정을 통해 TCFD 정보 공시 의무와 모색
-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NFRD 개정에 관한 협의 문서 마련, TCFD 정보 공시 사안을 어디까지 NFRD 개정법에 포함시킬지 등에 대한 의견 수렴



- 2006년 회사법(Companies Act)을 개정해 NFRD 내용을 포함한 「회사, 파트너십 및 그룹 (외계 및 비재무보고) 규칙 2016\*」 제정
  - \* *The Companies, Partnerships and Groups (Accounts and Non-Financial Reporting) Regulations 2016*
- 건전성 감독기구(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PRA), 2019년 4월 은행, 보험회사 등에 TCFD 제언 등의 이니셔티브를 도입할 것을 요청하는 감독 성명을 발표
  - ✓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재무 리스크 관리에 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정보공개 필요성 검토
  - ✓ 기후변화로 인한 재무 리스크의 공개에 관한 적절한 방법 개발
  - ✓ TCFD 기후 관련 재무정보의 공개에 관한 이니셔티브에 참가, 기업간 비교로 얻을 수 있는 이득 검토

- 2019년 7월 발표한 Green Finance Strategy에서 모든 상장사 및 대형 자산운용사에게 2022년까지 TCFD 정보공시를 요구, 전담 TF를 구성해 정보 공시 강제와 추진
- 2020년 11월, 2025년까지 영국 내 상장사, 은행, 보험사 등에 대해 TCFD 정보공시 강제와 방침 표명





**France**

- NFRD의 내용을 국내에서 법제화하기 위해 2017년 「비재무정보 공개와 관련된 위임 입법\*」 제정
  - \* *Ordonnance n° 2017-1180 du 19 juillet 2017 relative à la publication d'informations non financières par certaines grandes entreprises et certains groupes d'entreprises*
  - ✓ 동법의 세칙으로 대통령령(Décret 2017-1265)에 NFRD에 준거한 정보공시에 관한 상세 내용 규정
- 2015년 7월 「에너지이행법\*\*」 173조는 자산이 5억 유로를 넘는 상장사에 대해 기후변화로 인한 재무위험 그리고 그 재무위험을 외피하기 위한 대책 및 기업활동이나 자사의 상품·서비스 이용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연차보고서 등에 공시토록 의무화
  - \*\* *LOI n° 2015-992 du 17 août 2015 relative à la transition énergétique pour la croissance verte*



**Germany**

- NFRD의 내용을 법제화하기 위해 기업의 정보공개를 규정한 상법 등의 개정법으로 2017년 「CSR 지침 이행법\*」 제정
  - \* *CSR-Richtlinie-Umsetzungsgesetz*
- 이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기업, 금융기관, 보험회사 등에 대해 환경·사회적 과제, 인권존중 및 부패·뇌물수수 방지 등의 공개대상 영역에 관한 방침, 성과, 주요 리스크, 리스크 관리방법, KPI 등을 기재한 비재무정보보고서를 작성해 연차보고서에 포함시켜 공개하도록 의무화



## U.S.A.

- 1933년 미국 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에 기초한 Regulation S-K에 따라 주식공개기업이 연차보고서(Form 10-K)에서 실시해야 하는 비재무정보를 포함한 정보공시요건 규정
    - ✓ 이 규칙에서는 기업의 재무상황이나 경영성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사항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
  - 동 규칙을 관할하는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10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보공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국내의 기후변화 대응 및 기후 관련 과제가 기업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정보공시에 관한 견해 표시
- \* Commission Guidance Regarding Disclosure Related to Climate Change*

✓ 그러나 이 규칙에는 구체적인 공개항목이나 공개방법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공개의 기준이 되는 '중요성'의 판단도 보고주체에 맡겨져 있어 각 기업이 공개하는 정보에 큰 편차 발생

- 종전 공시제도는 시장 참가자나 감독당국에서 원하는 만큼의 정보의 범위나 질이 못 미침에 따라 미국 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가 나서 2020년 9월 '중요성'의 정의 명확화,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의 세계적 진전 추이를 토대로 SEC 가이드라인을 제검토 및 정보공시 가이드라인의 확실한 시행을 위한 규칙 마련 필요성 강조





• 2020년 2월 지속가능보험포럼(Sustainable Insurance Forum; 이아, SIF)과 공동으로 발표한 기후관련 재무정보 공시에 관한 테스크포스 제안 실시에 관한 논점에서 강제와 방심 제시

- SIF가 2019년 15개국 1,170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TCFD 정보공시 연장에 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후관련 재무정보의 공개수준이 보험사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점을 지적, TCFD 정보공시가 임의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공시 정보의 질과 범위가 앞으로도 미흡할 수 있다는 가능성 우려, 영국과 프랑스를 포함한 복수의 감독당국과 정부기관이 기후 관련 리스크를 금융시스템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기후 관련 재무정보의 공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 정보공시 강제와 각 보험사가 자발적인 정보공시의 역진성을 방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의견 포용
- 2020년 10월 기후 관련 정보공시를 포함한 Application Paper on the Supervision of Climate-related Risks in the Insurance Sector 발간, 각국 의견 취합

*E.O.D.*





# 『보험학회지』 연구윤리규정





## 『보험학회지』 연구윤리규정

2014년 4월 29일 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험학회지 연구윤리규정으로(이하 '연구윤리규정'이라 한다) 사단법인 한국보험학회(이하 학회라 한다)가 발간하는 『보험학회지』의 논문게재와 관련한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준수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제2조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 규정)

- ①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저술해야 하며, 새롭고 독창적이며 어떤 언어로도 다른 매체에 발표된 적이 없는 새로운 논문을 투고한다.
- ② 저자는 연구윤리를 준수하여 연구 결과를 정직하게 사실대로 보고한다.
  1. 존재하지 않는 자료를 제시하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드는 등의 위조행위를 하지 않는다.
  2. 연구과정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혹은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등의 변조행위를 하지 않는다.
  3.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연구결과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등의 표절행위를 하지 않는다.
  4. 논문 작성에 공헌하지 않은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거나, 논문 작성에 공헌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등의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다른 학술지와 심사 기간이 중복된 논문을 투고하는 등의 중복게재 행위를 하지 않는다.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7.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③ 데이터는 신뢰할 수 있는 타당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수집, 기록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여 필요 시 확인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④ 논문 저자의 순서는 공동저자간의 합의 하에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교신저자는 공동저자들을 대표하여 데이터의 정확성, 저자로 기록된 이름, 모든 저자들의 최종 초안 승인, 모든 교신과 질문에 대한 응답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⑤ 학술지의 심사, 편집, 출판 규정을 따르며, 편집위원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적극 협력한다.
  1. 저자는 논문을 평가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하도록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 제시하여야 한다.

2. 저자는 논문을 투고하고 난 이후 혹은 출간된 이후라도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 이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즉시 편집위원에게 알리고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
- ⑥ 저자는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때 연구윤리 규정준수를 확인하는 연구윤리 준수확약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 제3조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 규정)

-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심사 과정의 진실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 ② 편집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투고 논문 평가를 의뢰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또한 게재가 결정된 후에도 심사위원 실명을 기밀로 한다.
- ④ 심사 중인 논문의 윤리 규정 위반 혐의가 제기되는 경우에 편집위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되 심각한 연구부정 혐의가 인정되면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한다.
  1. 심사자가 투고 논문의 자료의 불일치나 오류 등을 발견함으로써 저자의 윤리 규정 위반 혐의가 제기될 때, 편집위원은 제기된 문제를 검토한 다음 검토 결과를 저자에게 통보하여 저자의 소명을 서면으로 받는다. 검토 결과 정직한 실수로 판명되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수정된 논문을 재심사한다. 그러나 부분적인 수정으로 논문을 바로잡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저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동시에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다.
  2. 심사자가 투고 논문의 표절이나 중복게재의 가능성을 제기하면 편집위원이 표절 혹은 중복게재의 여부 및 그 정도를 확인한다. 표절이나 중복게재의 정도가 경미하다면 저자와 협의하여 출처를 밝히고 적절하게 인용하는 수준으로 논문을 수정한 다음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부분적인 수정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수준의 심각한 표절이라면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⑤ 편집위원은 논문이 출간된 이후라도 논문과 관련된 잘못이 발견되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
  1. 논문 정정 - 편집상의 실수가 발견되었을 때, 논문 전체의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적인 계산 또는 실험 과정의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 저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저자 목록에 빠지는 등 저자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때, 논문 전체에서 극히 일부의 문장이 표절로 확인되는 경우 원저자 또는 저작권자의 의견에 따라 출처를 밝히고 정확하게 인용하는 형태로 정정문을 발행한다.
  2. 편집위원 고지 - 발간된 논문의 타당성을 의심할 만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아직 확정적인 결론을 얻지 못했을 때, 편집위원 고지를 통해 이 사실을 독자에게 해당 사안을 설명하고 우려를 표명함으로써 잠재적인 부작용을 줄인다. 결정 즉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고지문을 탑재하고 직후 인쇄되는 학술지에 고지문을 게재한다.



#### 제4조 (심사자가 지켜야 할 윤리 규정)

-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자신이 맡은 심사를 제3자에게 부탁하는 행위를 삼간다.
- ② 심사위원은 논문의 질, 연구의 실험성, 이론 및 해석에 관해 엄격한 과학적 기준 및 연구 기준을 적용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평가해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며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은 삼간다. 심사평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는 그 이유도 함께 설명해야 한다.
- ④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기밀을 지켜야 한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회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심사위원은 자신의 심사 사실을 기밀로 하고, 심사 종료 후에는 심사 대상 논문을 분쇄하거나 컴퓨터에서 삭제한다.

#### 제5조(연구윤리위원회)

- 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편집위원장, 편집간사를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독립성과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장은 회원의 요청이 있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 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⑤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학회와 관련된 논문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2. 연구윤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학회와 관련된 연구 정직성에 관해 제기된 선의의 고발 사항
4.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5. 학회와 관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나 관리책임자가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7. 연구윤리위반에 대한 처리와 제재의 건의에 관한 사항

### 제8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및 판정)

- ①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학회사무국에 연구부정행위가 접수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처리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학회의 최종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논문제출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연구부정행위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사 및 처리절차의 개시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조사 및 처리의 결과를 학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조사 및 처리 결과에 따른 조치)

- ① 위원회는 학회 운영위원회에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판정한 논문제출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를 건의할 수 있다.
- ② 학회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그 종류로는 다음이 있다.
  1. 연구자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학회의 공식적인 시정요구나 징계사항 통보
  2. 부정행위가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학회지 첫 호에 논문 철회문을 게재하여 연구부정행위 사실 공지
  3. 일정 기간의 학회지 논문투고 금지
  4. 일정 기간 회원자격 정지 또는 박탈
  5. 해당 연구의 연구비 지원기관에 부정행위와 징계사항 통보
  6. 해당 연구결과물에 대한 인정취소 또는 수정 요구
  7. 사법기관에 고발
- ③ 관련 기록은 모든 절차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 제10조(사후관리대책)

- ① 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피조사자의 조사내용·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현저히 문제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추가적인 조사의 실시 또는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피조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전항의 재조사에 따른 결과를 학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 (윤리 규정의 수정)

본 연구윤리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윤리 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사람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 부 칙

1. 본 연구윤리규정은 2014년도에 4월말 발간되는 『보험학회지』 심사 대상 논문부터 적용된다.

